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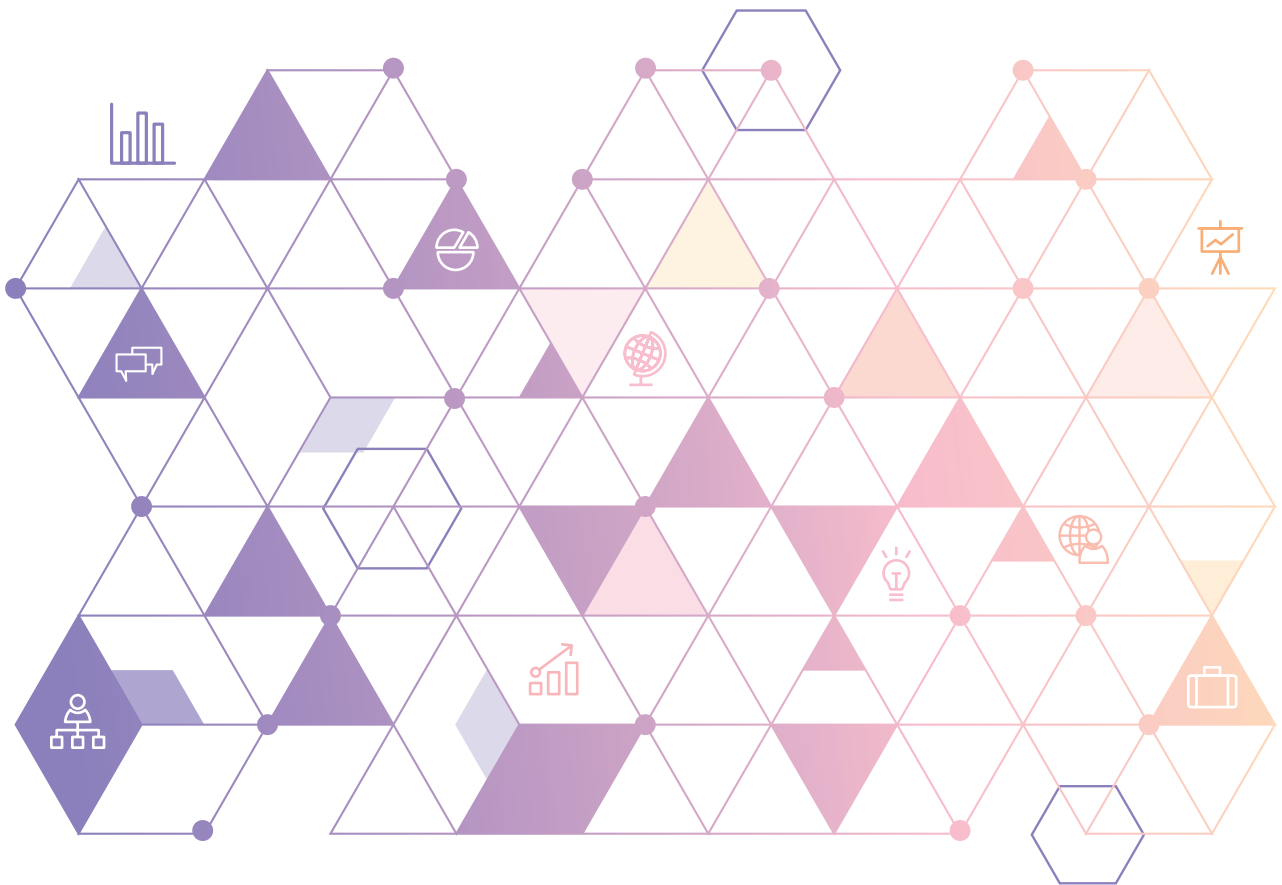
법·제도

법제분석

기술 분쟁해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ADR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DR System for the Efficiency of Technology Dispute Resolution

2022. 12.



2022년도 기초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법·제도 연구

기술 분쟁해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ADR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중소기업의 ADR 활용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Legal System

A Study on the ADR System for the Efficiency of Technology
Dispute Resolution

- to promote the use of ADR by SMEs -

2022. 12.

제 출 문

특허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기술 분쟁해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ADR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중소기업의 ADR 활용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 구 기 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연 구 책 임 자 : 김영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원)

요약

국문

분쟁을 해결하는 대표적 수단은 소송이다. 그러나 분쟁의 대상이 기술인 경우 소송제도를 통한 분쟁해결은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분쟁해결에 이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ADR이다. ADR은 소송을 통해 담보해 줄 수 없는 ‘전문성’, ‘비공개성’,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써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재 활용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동시에 ADR제도 활성화 및 개선방안에 대한 대·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의 요구는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활용도는 낮으나 활성화 및 개선방안에 관한 수요는 높은 상황에 따라 본 연구는 실시되었으며 다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 ① 지식재산 관련 분쟁에 있어 기존의 소송제도가 부적절한 이유 그리고 이에 따른 ADR 도입배경을 알아보고 현재 운용 모습과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 수요의 모습을 살펴본다.
- ② ADR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및 정부차원의 논의에 관한 검토를 통해서 설명되고 있는 원인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검토한다.
- ③ 선행연구들이 언급하고 있지 않는 조정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과 전문성(기술전문성과 조정전문성) 제고 방안과, 시효중단을 비롯한 조정과 소송절차의 관계 그리고 기타 제언들을 제시함으로써 ADR제도 활성화 방안을 구성한다.

행정형 ADR제도는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산하기관을 통해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며, 특히, 기술(지식재산)의 분쟁의 경우 ADR의 장점은 긍정적으로 발휘될 것이다. 신속하고 저렴할 뿐만 아니라 분쟁 대상의 특수성을 보존할 수 있으며 관련 기술의 비밀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데에서 ADR 활용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추구하며 분쟁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ADR제도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기대해 보며 본 연구를 통해 제언한 방안을 제시해 본다.

요약문	i
제1장 서론	1
제2장 ADR제도의 도입 배경과 운영 현황	7
제1절 ADR제도의 도입 배경	9
I. 기술 관련 분쟁해결의 특수성	9
II. 소송제도의 한계	10
제2절 ADR제도 일반	12
I. ADR의 의미	12
II. ADR의 순기능과 역기능	13
III. 행정형 ADR	14
IV. 행정형 ADR의 종류	16
V. ADR과 소송의 관계	18
제3절 ADR제도의 국내 운영 현황	19
I. 국내 운영현황 일반	19
II. 지식재산 관련 ADR 기관 현황	20
III. 저조한 운용 현황	27
IV. ADR제도 활성화에 관한 높은 수요	28

제3장 **선행 ADR 연구에 관한 검토** **31**

제1절	개요	33
제2절	낮은 활용의 원인	34
	I. ADR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	34
	II. 사무국과 조정위원회의 낮은 역량	35
	III. 조정제도의 내재적 한계	35
제3절	문제점 해결방안	36
	I. 낮은 인식에 대한 해결방안	36
	II. 낮은 역량에 대한 해결방안	39
	III. 조정 내재적 한계에 대한 해결방안	41
제4절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45
	I. ADR에 대한 충분한 인식	46
	II. 조정위원회의 실질적 개선방안 필요	47
	III. 행정형 ADR의 유지 필요	48
	IV. 소결	51

제4장 **ADR 활성화 방안** **53**

제1절	개요	55
제2절	조정위원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방안	56
	I. 독립성·중립성 제고 방안	56
	II. 전문성 제고 방안	64

제3절 조정과 소송의 관계	74
I. 시효중단효	74
II. 조정과 소송절차	76
제4절 기타 제언	78
I. 조정위원회 통합에 관한 의견	78
II. 상설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견	79
III. 기술침해평가위원회 신설에 관한 의견	81
IV. 웹사이트 서비스에 관한 의견	83

제5장 결론	85
---------------	-----------

참고문헌	89
-------------	-----------

표목차

표 1	2021년 국내 기업의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지원의 필요성	3
표 2	2020년 국내 기업의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지원의 필요성	4
표 3	효과적인 지식재산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정책수요	4
표 4	지식재산 관련 ADR 기관 운영 현황	20
표 5	법적 근거	21
표 6	제2조 제1항 가-자목	23
표 7	ADR제도 운용 현황	27
표 8	2021년 국내 기업의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지원의 필요성	29
표 9	2020년 국내 기업의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지원의 필요성	29
표 10	효과적인 지식재산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정책수요	30
표 11	ADR 활용 문구 예시	37
표 12	자료제출과 사실조사에 대한 제도별 편성	42
표 13	ADR 활용 저조 원인과 개선방안	45
표 14	피해 구제기관 인지도 및 이용 여부	46
표 15	절차의 공정성 인식	49
표 16	결과의 공정성 인식	49
표 17	절차와 결과에 있어 전관예우 영향력 인식	50
표 18	ADR 활용 저조 원인과 개선방안(검토 의견)	51
표 19	피해 구제기관 신뢰도	57
표 20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직능별)	59
표 2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기술별)	59
표 22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구성(직능별)	59
표 23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구성(기술별)	59
표 24	독일소비자ADR법 조정인 독립성 관련 규정	60
표 25	국가과학기술 연구회	65
표 26	조정 성립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	66
표 27	지식재산 분야 분쟁 조정제도 교육 워크숍 프로그램	67
표 28	대한상사중재원 제15기 조정전문가 기본 과정	68
표 29	과정별 개요	68
표 30	과정별 내용	69
표 31	조정전문가 과정	70
표 32	조정인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 교육	71
표 33	과정별 개요	72
표 34	지식재산권 관련 ADR 기관 현황	78
표 35	ADR 개선 방안 요약	87

그림목차

그림 1	조정 절차	22
그림 2	조정 절차	24
그림 3	조정·중재 절차	26

법·제도 연구

기술 분쟁해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ADR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중소기업의 ADR 활용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제1장 서론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분야 및 영역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은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분쟁의 복잡화·전문화에 따라 기존의 권익기반보호인 소송제도는 한계를 보이게 된다. 특히, 민사소송은 당사자 간의 대립구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정형화·구조화되어 있는 틀 속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이해관계와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조정, 중재 등 저렴하고 간소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이하 ADR)가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기술 분야에도 역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1995년부터),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중재 위원회(2015년부터)¹⁾,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2013년부터)가 현재 운영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기업의 ADR제도 활성화에 관한 요구는 상당히 높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실시한 ‘2021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에 관하여 국내 기업들은 ‘조정, 중재 등 저렴하고 간소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와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기업 유형별로 구분하였을 경우, 중소기업은 두 번째로 선호(54.1%, 5항목 중 2위)하였고 중견기업은 첫 번째로 선호(59.7%, 5항목 중 1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도 첫 번째로 선호(56.0%, 5항목 중 1위)하는 정책지원으로 ADR제도를 꼽았다.²⁾

▮ 표 1 ▮ 2021년 국내 기업의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지원의 필요성

2021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자료 참고

보호 정책 및 제도	전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법률상담 등 정부 지원 사업 강화	56.1%	51.7%	57.7%	56.1%
조정, 중재 등 저렴한 ADR제도 활성화	54.4%	56.0%	59.7%	54.1%
	2위	1위	1위	2위
지식재산 침해 관련 형사처벌 강화	51.7%	53.0%	48.3%	51.8%
기업과 국민 인식제고	50.2%	54.5%	52.1%	50.0%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민사손해배상액 증액	49.4%	55.7%	50.5%	49.3%

註 (%)는 5점 척도(1: 전혀 안 필요, 5: 가장 필요)에서 [(4점과 5점으로 응답한 기업수)×100(%)]

또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실시한 ‘2020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에 관하여 국내 기업들은 ‘조정, 중재 등 저렴하고 간소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와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기업 유형별로 구분하였을 경우, 중소기업은 두 번째로 선호(48.8%, 5항목 중 2위)하였고 중견기업은 첫 번째로 선

1) 2022년 9월,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 246개에 관한 폐지 및 통합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가 폐지 대상에 포함된다.

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1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2021.12.), 81페이지.

호(56.6%, 5항목 중 1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다른 정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요가 낮은 편이나, 국내 기업 전체로 유형을 구분하였을 경우에는 그 수요가 상당히 높은 편(49.1%, 5항목 중 2위)임을 알 수 있다.

표 2 | 2020년 국내 기업의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지원의 필요성

2020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자료 참고

보호 정책 및 제도	전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컨설팅, 법률상담 등의 정부지원 사업	53.4%	42.8	55.4%	53.5%
조정, 중재 등 저렴한 ADR제도 활성화	49.1%	45.4%	56.6%	48.8%
	2위	3위	1위	2위
지식재산 침해 관련 형사처벌 강화	47.7%	45.6%	52.4%	47.5%
기업과 국민 인식제고	46.5%	43.7%	53.6%	46.2%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민사손해배상액 증액	45.9%	49.2%	50.2%	45.7%

註 (%)는 5점 척도(1: 전혀 안 필요, 5: 가장 필요)에서 [(4점과 5점으로 응답한 기업수)×100(%)]

ADR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요구는 비단 기업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이에 대한 대학, 연구소의 수요 역시 낮은 편이 아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수행한 ‘2021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효과적인 지식재산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정책수요에 대한 답변으로 국내 대학 공공(연)은 ‘대학·공공(연) 대상 컨설팅, 법률상담 등’이 70.9%로 가장 높았으며, ‘조정, 중재 등 저렴하고 간소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가 56.2%로 세 번째로 높았다.

표 3 | 효과적인 지식재산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정책수요

2021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자료 참고

보호 정책 및 제도	전체	국공립 대학	사립 대학	정부 출연(연)	기타 공공(연)
대학·공공(연) 대상 컨설팅, 법률상담 등	70.9%	82.5%	69.6%	68.4%	65.0%
학계, 연구계와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강화	65.3%	79.8%	65.8%	57.9%	46.9%
조정, 중재 등 저렴한 ADR제도 활성화	56.2%	65.1%	55.4%	52.6%	52.3%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49.3%	53.0%	50.1%	47.4%	39.7%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액 증액	48.7%	59.0%	46.9%	52.6%	44.1%

註 (%)는 5점 척도(1: 전혀 안 필요, 5: 가장 필요)에서 [(4점과 5점으로 응답한 기업수)×100(%)]

ADR제도 활성화에 관한 국외의 움직임도 매우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유럽, 중국, 일본의 최근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1년 7월, 영국지식재산청(UKIPO)은 지식재산 집행 관련 이슈에 관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ADR제도에 관한 이용률이 낮은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안 도출 계획 발표하였다. 2021년 3월, 유럽지식재산청(EUIPO)은 ADR제도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당사자가 된 이의제기 및 무효·취소 사건에 대해서 효율적 분쟁해결(Effective Dispute Resolution, EDR)을 운영해 EDR 개시 후 48시간 내에 분쟁을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발표하였다. 2020년 3월, 일본은 민사사법제도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사 분쟁에 관한 ADR의 개혁을 위해 필요한 검토실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2019년 10월, 중국은 ‘하이난 자유무역구 지식재산권 중재·조정·화해 센터 설립하여 ADR제도의 활성화를 발표하였다.

ADR제도는, 기술 관련 분쟁의 특수성이 존재하고 기존의 권익보호기반(소송제도)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지식재산권과 기술 분야와 관련하여 길게는 저작권 분쟁조정(1987년부터) 그리고 짧게는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2015년부터)를 포함하여 현재 5개 분야에 관하여 ADR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과 대학 그리고 연구소들에서 지금도 ADR제도에 관한 활성화 요구가 여전히 높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번 연구에서는 ADR제도의 낮은 활용 현황을 인식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첫째, ADR제도가 무엇이고 도입의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실시 현황과 낮은 활용의 원인에 대하여 선행연구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본 이후 중국적으로는 ADR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살펴보고 제언함으로써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법·제도 연구
기술 분쟁해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ADR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중소기업의 ADR 활용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제2장

ADR제도의 도입 배경과 운영 현황

제1절 ADR제도의 도입 배경
제2절 ADR제도 일반
제3절 ADR제도의 국내 운영 현황

제1절

ADR제도의 도입 배경

I 기술 관련 분쟁해결의 특수성

국가적 목표인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기술 기반의 창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즉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자본 등 전통적 요소투입 확대에서 혁신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 등에 기반을 둔 성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된 패러다임 속에서 기업의 핵심자산인 기술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술은 기업의 가치 및 브랜드 보호뿐만 아니라 투자유치, EXIT(기업 상장, 인수합병 등)을 촉진하며 고용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생존, 성장, 성공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된 지 오래이다.

특히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기술에 관한 법적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해지기 때문에 기술 관련 분쟁으로 생사의 기로에 서기도 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침해 당한 사건이 압도적으로 과반수이며, 대기업이 피해자인 사건은 6.8%에 불과하다. 또한 2009년부터 2013년의 5년간 중소기업이 특허침해를 이유로 대기업을 상대로 싸운 소송에서 승소율은 고작 11.1%에 불과하다.³⁾ 미국의 경우도 벤처캐피털 협회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중 70%가량이 지식재산 관련 분쟁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권 분쟁으로 매우 심각하거나 상당히 심각한 기업의 경영위기(기업 전략 수정, 자원 재배치 등)를 경험한 비율이 58%를 차지한다고 한다.⁴⁾ 이렇게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에 관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 이르러 이러한 증가추세는 더욱 커지고 있다.

기술은 무체물이다. 유체물의 경우 실질적인 점유를 통해서 타인을 배제할 수 있으나, 무체물인 기술, 지식, 정보 등의 경우 비배타적 또는 비경합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있어 정당한 권리자를 우회하는 침해가 유체물보다 더욱 쉬울 수 있으며 실질적인 구제는 더욱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의 근본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기술 관련 분쟁의 특수성을 다음과 같이

3) 중도일보,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네이버 뉴스,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180207010002901\(2018.2.8\)](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180207010002901(2018.2.8)).

4) 현대경제연구원, 국내의 스타트업 현황과 시사점(2016.5.16.), 10페이지.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기술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소송과 관련 법리에 관한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지식이 함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둘째, 기술 비밀유지가 요구된다. 분쟁으로 비롯된 이후 해결 과정에 있어 대상 기술 관련 정보가 보호되어야 한다. 셋째, 신속성과 신뢰성이다. 기술 환경이 빠르게 변모하는 만큼 기술의 탄생과 도태 역시 그 주기가 짧아지므로 분쟁해결은 신속해야 하며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글로벌적 성향이다. 이동수단의 발전으로 인한 국제간 무역거래의 활발과 IT 기술 발달로 인한 국경을 초월한 기술 분쟁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수단이 요구된다.

II 소송제도의 한계

과거 기술 관련 분쟁, 특히 특허 분쟁과 같은 산업재산권의 경우 국내 분쟁은 물론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제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모습이 전형적이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기술 관련 분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권익보호기반인 소송제도는 분쟁해결수단으로써 그 효율성이 매우 낮다. 법원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은 국가의 역사적·문화적 산물으로써 각국의 사정을 반영한 재판이라는 측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 분쟁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⁵⁾는 점이 소송제도의 근본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시작으로 다음의 한계 모습들이 거론되고 있다.

첫째, '높은 비용'이다. 대기업의 경우 높은 소송비용을 투입하는 데에 경제적 부담이 덜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실제로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공통된 애로사항은 법률비용 부담이며, 심지어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기술 분쟁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부담을 우려하여 기술침해를 당하고도 소송제기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한다.⁶⁾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기술침해 발생 후 '아무 조치 없음'으로 응답한 기업은 4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유로는 '시간과 법적 비용부담'이 38.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⁷⁾ 이렇듯 소송에 소요되는 높은 비용은 기업에 경제적 부

5) 윤선희, ADR에서의 지적재산권분쟁, 중재연구 제13권 제1호(2002), 130페이지.

6) 산업일보, 기술 탈취 피해 기업 소송 비용지원, 법적 근거 마련한다, 네이버뉴스, <https://www.kidd.co.kr/news/225290> (2021.12.22. 15:19).

7)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2020년도 중소기업기술 보호수준 실태조사 보고서(2021.02.), 12~13페이지.

답으로 다가오며,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그 영향이 더욱 크다. 그러므로 기술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 높은 비용이 수반되는 소송제도는 실질적인 해결수단으로써 한계가 있다.

둘째, ‘관할권’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은 그 본질상 속지적이어서 국제조약이 아닌 국내법에 의해 창설되는 것이다. 이러한 속지주의 원칙은 국제적 영역에서 각 국가의 주권이론의 일부분에 해당하여서 모든 국가의 국내법에 적용되는 입법관할(jurisdiction to prescribe)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각국은 지식재산권 법제도를 제정 내지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이를 사법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다. 이는 한 국가의 영토관할권을 정하는 것으로써 장소적으로 자신의 영토, 영해, 영공 등 배타적 관할권이 미치는 영역에 국한되고, 결국 자국의 법률이 타국에 효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IT의 발전은 이러한 이론 적용에 실질적인 한계를 현실화하였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과정에서의 분쟁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발신된 정보가 전 세계 어디서든지 접근 가능하다는 사실 때문에 소송을 위한 법정지 선택 옵션은 무수히 많아진다. 결국 이렇게 소송을 개시하기 이전에 관할권이란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러한 사전절차로 인하여 기술침해 피해기업은 기술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제도의 활용을 주저하게 된다.

셋째, ‘신속성’ 문제이다. 현대에 이르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기술 및 제품의 수명은 더욱 짧아지고 있다. 이렇게 짧은 기술 주기에 비해 소송과정에 필요한 시간은 매우 길기 때문에 소송이 끝난 시점에 이미 해당 기술의 수명이 마감된다면 소송에서 이긴 경우라 해도 실질적인 이익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 가장 최근까지 이슈화 되었던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관련 소송만 보더라도 2019년 4월 시작되어 2021년 2월에 이르러 최종심결이 내려졌으며 이는 1년 10개월의 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20년도 기준으로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민사사건은 9개월,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심결취소소송은 9.6개월, 지방법원 지식재산 관련 민사소송은 14.7개월, 고등법원의 지식재산 관련 민사소송은 8.6개월이 평균 소요기간임을 확인할 수 있다.⁸⁾

넷째, ‘비밀의 유지’ 문제이다. ‘비밀의 유지’란 소송의 대상인 기술이 영업비밀로 보호되어 있는 상태라면, 소송의 과정 속에서도 해당 기술의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 제109조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고 다만 심리의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만 비공개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소송제도는 이러한 비밀 유지의 필요성을 담보해 주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기술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소송제도는 지금까지 설명하였던 한계를 지니고 있고, 소송제도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모습들을 내포하고 있는 ADR제도가 기술 관련 분쟁 해결수단으로써 도입되었다.

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2020년도 지식재산 관련 소송통계 업데이트,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20518.

제2절

ADR제도 일반

I ADR의 의미

ADR이란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줄임말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또는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라고 해석된다. 이는 소송절차에 의한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 즉 전통적 재판절차에 대체한 수단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ADR이 활성화 되어 소송 중에서도 ADR이 이용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대안이라기보다는 전통적 법원 중심적 법문화에 대한 대안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따라서 ADR은 전통적 사법시스템으로서 공식적 소송절차에 대한 대체적(또는 대안적) 분쟁해결수단의 총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ADR의 활용에 따라 달성 또는 발생하는 가치들이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

첫째, 당사자 자치 원칙이 달성된다. ADR에서의 당사자는 분쟁해결 절차와 결론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선택을 할 수 있다. 물론 소송제도에서도 당사자에게 처분권주의가 인정되나, 대부분의 결정권한은 법원에 있으며 선택도 당사자보다는 대리인(변호사)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ADR에서는 절차의 신청 및 참여에서부터 합의 결정 전까지의 모든 과정까지 당사자의 결정과 선택에 의해 진행된다. 즉, 당사자의 결정권한 또는 선택권한이 현실화된다.

둘째, 법치주의가 완화된다. 소송제도가 개시되면 당사자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은 법률을 근거로 결정된다. 그러나 ADR에서는 법률 외에도 다양한 기준들이 적용될 수 있다. 사회규범, 도덕, 규범, 이해관계, 조리, 사회상규 등 다양한 기준들이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됨으로써 법치주의가 완화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셋째, 분쟁해결의 폭이 소송제도를 통한 해결보다 더욱 넓고, 분쟁해결 결과가 분쟁의 실체에 근거한 결정에 유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분쟁은 가치배분과 가치창조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일반인데, 소송을 통해서는 가치배분의 문제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소송을 통한 구제수단은 법률에서 정해진 것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ADR은 가치배분이 아닌 창조의 관점에서 문제해결이 가능하며, 당사자 사이의 승패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구제수단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II ADR의 순기능과 역기능

이러한 ADR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번에는 이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순기능이다.

첫째, '전문성'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술 관련 분쟁해결에는 법률지식뿐만 아니라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일반인에 의한 분쟁해결보다는 해당 기술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자의 개입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ADR제도에서의 당사자는 자신이 원하는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지식을 지닌 자를 제3자로 개입시킬 수 있고, 이로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제도의 경우 법관을 당사자가 선정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전문성이 확보되기 어렵다. 물론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감정인을 선정하여 그의 의견에 의존할 수 있으나 이는 일시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중재의 경우 처음부터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심리를 진행함으로써 전문성을 일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둘째, '비공개성'이다. 해당 기술이 특허로 보호받는 경우라면 해당 기술이 공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밀유지의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경우라면 이러한 비공개성은 절실히 요구될 것이다. 헌법 제109조에 의해 소송제도는 공개원칙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해당 영업비밀이 공개될 수 있는 위험은 높아지며, 이러한 위험으로 인하여 기술침해 기업의 경우(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소송의 개시를 주저하게 된다. ADR은 비공개 진행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해당 기술의 비밀유지가 가능하다.

셋째, '신속성'이다. 소송제도의 경우 기본적으로 그 소요시간이 길고 3심제를 운영하고 있어 최종판결까지 요원하다.¹⁰⁾ 그러나 ADR의 중재는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기일을 당사자들이 설정할 수 있으며 소송제도에 비해 소요기간이 짧다. 2022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성립은 평균 2달 이내에 처리¹¹⁾되었으며, 국내 중재의 경우 약 170일, 국제중재의 경우 약 260일이며 신속절차사건의 처리기간은 약 115일이 소요된다. 또한 분쟁의 신속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집중심리로 심리회수를 줄이고 예비회의제도를 활성화하여 심리 자체의 소요기간도 단축하여 진

9) ADR의 순기능으로 전문성이 언급되고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전문성 부족'이 ADR의 낮은 활용 모습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서 부족한 '전문성'이란 '기술 전문성'과 '조정 전문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률 전문성'의 경우 매우 충분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하도록 하겠다.

10) 산업재산권 분쟁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허침해 소송심리기간은 3심까지 평균 40.2개월이 소요된다.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8399>.

11) 특허청, 분쟁조정, 특허상표권 분쟁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 보도자료(2022.7.26.),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19537&aprchId=BUT0000029>
(2022.10.16. 확인).

행될 수 있다. 이러한 신속성을 통해 기술의 짧은 Life-cycle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외에도 i) 변호사 선임비가 들지 않아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경제적인 비용으로 분쟁해결이 가능한 점, ii) 소송은 소송법에 의해 규정된 절차를 통해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지만, ADR은 상호 합의에 따라 형식을 완화하여 우호적이고 호혜적인 분위기로 분쟁해결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iii)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에 발생한 분쟁은 준거법과 관할재판권 등의 문제로 복잡한 반면 ADR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용이하다는 점, iv) 체증법칙보다는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한 해결로 사실발견에 따른 불필요한 절차들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이 ADR의 순기능으로 설명될 수 있다.

반면,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ADR제도에도 역기능이 존재한다. 첫째, 당사자에게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거나 사실관계의 조사가 불충분한 경우에 경제적·사회적 강자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 둘째, 신속성과 간소성만을 강조하면서 분쟁해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셋째, 분쟁을 바라보는 판단기준이 소송제도보다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이거나 당사자 간의 주장을 단순 절충하는 식으로 결론 내려질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존재하는 ADR제도이지만, 기술 분야의 분쟁해결수단으로써는 적합하다. 기술 분쟁은 당사자 간의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전제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기술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가 기업평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역시 대다수이다. 그러므로 소송보다는 ADR을 통한 분쟁해결이 더욱 긍정적이다. 또한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기술·문화트렌드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유연하고 전문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고, 특히 조정은 상호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비밀을 유지할 수 있어, 기술 분쟁의 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분쟁해결 수단이다.

III 행정형 ADR

현재 이러한 ADR은 건설, 건축, 주택임대차, 언론, 환경, 콘텐츠, 개인정보, 소비자,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ADR은 실시하는 주체에 따라 사법형, 행정형, 민간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의 ADR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행정형 ADR’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사조정, 가사조정, 노동전문조정 등과 같이 법원이 실시하는 것이 사법형

ADR이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조정중재센터 등과 같이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것이 민간형 ADR이다. 행정형 ADR이란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산하 기관 등을 통하여 분쟁해결을 주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형 ADR의 당사자는 사인(私人)인 것이 원칙이고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행정형 ADR의 일방 당사자가 행정기관인 경우¹²⁾ 또는 양 당사자 모두가 지방자치단체(단체, 장, 조합)인 경우¹³⁾도 법률에 의해 가능하다. 이러한 당사자 간의 분쟁은 조정 담당행정기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된다. 즉, 행정형 ADR은 분쟁해결수단에 관한 선택에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전제로, 특정 행정 분야의 정책형성 및 집행 권한을 지닌 행정기관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¹⁴⁾으로 한다.

행정형 ADR은 소송제도와 비교를 통한 장점 이외에 ‘행정형’이라는 자체의 장점이 존재한다. ‘행정형’이라는 모습에서 발현되는 장점은, 행정형 ADR 실시 행정기관은 유사한 분쟁에 대한 원인이나 가능성을 예측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필요한 법안을 입안하여 규제할 수 있다¹⁵⁾는 데에 있다. 즉, 행정형 ADR의 경우 담당 행정기관이 분쟁의 원인, 발생빈도, 성립률, 발생유형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이러한 파악을 통하여 해당 행정기관은 소관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방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입법과 정책의 형성 및 실현 수준을 높일 수 있다.

1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13) 지방자치법 제149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① 제148조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56조 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1. 시·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2.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3.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4.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5.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6.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14) 김봉철,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9.12.), 10페이지.
 15) 김상찬, 우리나라 행정형 ADR제도의 활성화 방안,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46집(2012.5.), 217페이지.

IV 행정형 ADR의 종류

행정형 ADR에서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이 바로 협상이다. 이는 제3자가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들 주도하에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당사자들 간의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비로소 제3자의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제3자의 개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쟁 해결 방법으로는 협상, 조정, 중재, 알선, 재정, 중재 등이 존재한다.

1. 협상(Negotiation)

협상이란 당사자들이 서로 상호교환과 양보를 통하여 공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의 과정이기도 하며, 다수의 이해당사자들이 여러 선택 가능한 대안들 중에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특정 대안을 찾아가는 의사결정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협상이란 타결의사를 지닌 복수의 당사자들이 쌍방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협상은 분배적 협상과 통합적 협상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협상에 있어 전제된 상황 속에서 당사자들이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구분된다.

2. 조정(Mediation)

조정이란 중립적 제3자, 즉 조정인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협상에 개입하여 분쟁 당사자들이 쉽게 협상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쟁해결방법이다. 즉, 조정이란 중립적 제3자가 분쟁당사자의 협상과정에 개입해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합의조건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이다. 여기서 조정인은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알선인보다는 적극적으로 당사자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협상을 유도할 뿐 분쟁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¹⁶⁾

조정 효력은 민법 제73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화해와 같고,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은 불가능하다. 조정은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며 당사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당사자들이 직접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소송을 통

16) 그러나 실제로는 당사자가 서로의 의견을 절충하여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촉진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조사관 등의 도움을 얻어 쟁점을 정리한 서면을 토대로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에게 수용할 것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김봉철, 전거서, 17페이지.

한 결과보다 클 수 있다. 조정은 당사자가 서로 오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당사자들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서로에게 만족할 만한 해결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

3. 중재(Arbitration)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¹⁷⁾ 즉, 중재는 분쟁 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사인 또는 사적 기관이 주체가 되어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이다. 이러한 중재는 재판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를 구속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따를 것을 합의(중재합의¹⁸⁾)한 경우에 가능하며, 양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¹⁹⁾

중재는 당사자 간의 상호양보는 제3자가 제시하는 조정안에 동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의 판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한다는 부분에서는 재판과 유사하다. 그러나 여기서 제3자란 국가권력에 기초를 두는 법원이 아니고 당사자들의 자주적 의사에 기초를 두는 사적법원(또는 관행, 관습, 형평과 선 등)의 판단을 의미한다. 결국 중재는 강제적 분쟁해결 방법인 재판과 화해(또는 조정)의 중간 위치에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재정(裁定)이 있다. 제정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 결과는 구속력이 없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불복하지 않거나 또는 진행 중인 소를 취하하면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절차 및 재정위원을 당사자가 정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4. 알선(Mediation)

알선이란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에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당사자들이 협상을 위해서도 마주 앉기 어려운 경우 이용된다. 알선을 이용하는 경우 제3자는 단순한 역할만 수행한다. 즉, 단순히 당사자를 소환하거나 협상 일시를 정하고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17) 중재법 제3조 제1항.

18) 중재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19) 중재법 제35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지만 동법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지거름 유도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사건에 관한 실체적 판단이나 평가는 일체 하지 않고 당사자에게도 그 어떠한 의견이나 조정안도 제시하지 않는다. 조정과 중재에 비해 비공식적이며 비정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V ADR과 소송의 관계

ADR은 분쟁을 저렴한 비용을 투입하여 분쟁을 효율적으로 창의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한다. 또한 당사자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관계를 지속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종국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²⁰⁾ 즉, ADR의 실시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시스템이 다양화되는 것이고, 당사자들은 소송만이 유일한 해결수단이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법원은 반드시 재판이 필요한 경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ADR 실시로 인한 법원의 사건부담 경감은 법관이 물리적·시간적 한계 내에서 재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ADR과 소송은 대립관계가 아닌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사법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ADR²¹⁾은 법원의 사법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분쟁해결수단인 것이다.

이에 더하여 ADR은 소송과는 별개로 독자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 소송을 사용할 것인지 또는 ADR을 사용할 것인지는 사건의 당사자가 선택하거나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되므로 ADR의 결과를 소송을 통해 확인받거나 재심사 받을 필요가 없기²²⁾ 때문이다.

20) 김봉철, 전거서, 3페이지.

21) 특히 실시하는 주체가 법원이 아닌 행정형 또는 민간형 ADR.

22)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2018), 27페이지.

제3절

ADR제도의 국내 운영 현황

I 국내 운영현황 일반

우리나라에서 운용 중인 ADR은 행정형 ADR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초의 행정형 ADR은 중앙노동위원회로 이는 1953년 노동위원회법 제정을 계기로 설치되어 노동관계에 관한 조정업무를 담당하였다. 우리나라의 ADR 기관들은 대부분 ‘위원회’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형 ADR 기관이 소속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해당 분야의 분쟁사건을 처리하며, 또한 합의제 형태로 처리함으로써 ADR의 본래 의도와도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²³⁾

현재 설치·운용 중인 대부분의 행정형 ADR 기관은 ‘조정’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알선, 중재, 재정 등과 같은 방식을 추가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각 기관들은 각각의 설치에 관하여 법률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각의 설치 법률에 따라 구성, 운영방식, 조정 절차와 소송제도와의 관계, 결과의 법적효력 등이 제각기 다르다. 이렇게 개별적인 운영 형태의 ADR 기관이라 하더라도 설치형태, 분쟁 분야 및 특성 등과 같은 기준들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설치형태에 따른 구분이다. 행정기관 소속으로 두는 조정위원회²⁴⁾도 있지만, 그 산하기관 및 관할 법인 소속하에 조정위원회²⁵⁾를 설치하거나 독립적인 위원회²⁶⁾를 설치하여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분야에 따른 구분이다. 분야는 크게 ‘건설·주택’, ‘언론·방송’, ‘노동·환경’, ‘정보·통신’, ‘거래·계약’, ‘금융’, ‘지식재산권’, ‘의료’, ‘인권’, ‘지방자치’로 구분될 수 있다. 셋째, 분쟁의 특성과 관련한 구분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적 분쟁만을 조정대상으로 하는 조정위원회와 법적 분쟁 외에도 갈등에 기인한 분쟁도 조정대상으로 하는 행정형 ADR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구분이 거의 대부분이며, 후자는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다.

23) 심준섭, 국내 행정형 ADR 기구의 비교분석 - 문제점과 대안, 공존협력연구소 공존협력연구 제1권 제1호(2012.12.), 57페이지.

24) 특허청의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가 행정기관 소속으로 두는 조정위원회의 유형에 포함된다.

25)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등이 있다.

26)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이 있다.

II 지식재산 관련 ADR 기관 현황

표 4 | 지식재산 관련 ADR 기관 운영 현황

기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위원회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	산업기술 분쟁조정 위원회	저작권 분쟁조정 위원회	콘텐츠 분쟁조정 위원회
소관부처 (운영기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분야	산업재산권	중소기업기술 탈취	기업, 연구 등에서의 산업기술 유출	저작권	게임, 영상 등 콘텐츠
근거	발명진흥법 제41조 제1항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3조	산업기술 보호법 제23조	저작권법 제112조, 113조	콘텐츠산업법 제29조
시행	1995년	2015년	2013년	1987년	2011년
조정 합의에 관한 효력	재판상 화해(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가. 일반 사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²⁷⁾는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직무발명,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분쟁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경제적으로 대응하여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5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부처는 특허청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분야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상표·디자인분야’, ‘기계·금속분야’, ‘화학·생명분야’, ‘전기·전자분야’, ‘정보통신분야’, ‘법률분야’, ‘직무발명분야’로 총 7개의 분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1인이다. 위원장 포함 15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으며, 조정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때 조정부 1인은 반드시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구성된다. 조정합의는 재판상의 화해, 즉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그리고 공익변리사 제도를 활용하여 조정 전 상담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27)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066.

나. 법적 근거

법적 근거는 발명진흥법 제41조~제49조이다.

표 5 | 법적 근거

내 용	관련 조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제41조
위원의 개척·기피·회피	제41조의2
조정부	제42조
조정의 신청 등	제43조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제43조의2
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44조
출석의 요구	제45조
조정의 성립 등	제46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6조의2
소멸시효의 중단 등	제47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48조
경비 보조	제49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49조의2

다. 분쟁 조정절차

산업재산권 등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조정을 받으려는 자가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조정이 신청된다.²⁸⁾ 여기서 조정의 신청자는 산업재산권 출원인, 권리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직무발명자, 영업 비밀을 보유한 자, 그 밖에 해당 권리의 실시, 직무발명 또는 영업비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한정된다.²⁹⁾ 조정의 대상은 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 출원 포함), 직무발명, 영업비밀(기술상의 정보와 관련된 영업 비밀을 의미)이다.³⁰⁾ 그러나 분쟁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³¹⁾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28) 발명진흥법 제43조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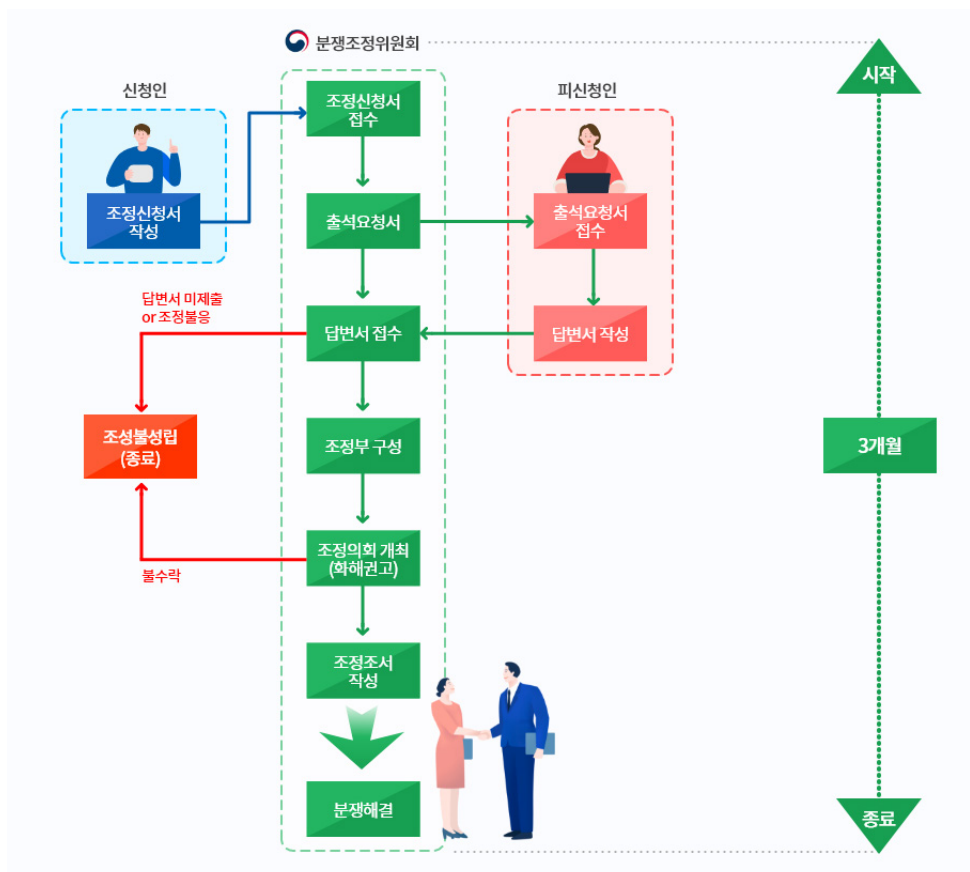
29) 발명진흥법 제43조의2 제1항.

30) 발명진흥법 제41조 제1항의 제1~3호.

31) 발명진흥법 제44조.

있으면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³²⁾ 그리고 위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³³⁾

Ⅰ 그림 1 Ⅰ 조정 절차



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2.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가. 일반 사항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는 산업기술 유출 분쟁으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는 산업기술분

32) 발명진흥법 제43조 제3항.

33) 발명진흥법 제43조 제4항.

쟁조정위원회의 소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³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³⁵⁾ 또한, 분쟁의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두되, 그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³⁶⁾

나. 법적 근거 및 산업기술의 범위

위원회의 법적 근거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³⁷⁾로 명료하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동 위원회가 소관할 수 있는 산업기술의 범위이다.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동법 제14조의3(산업기술의 해당 여부 확인)에 따라 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표 6 | 제2조 제1항 가~자목

산업기술의 범위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부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부리기술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3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35) 동조 제23조 제6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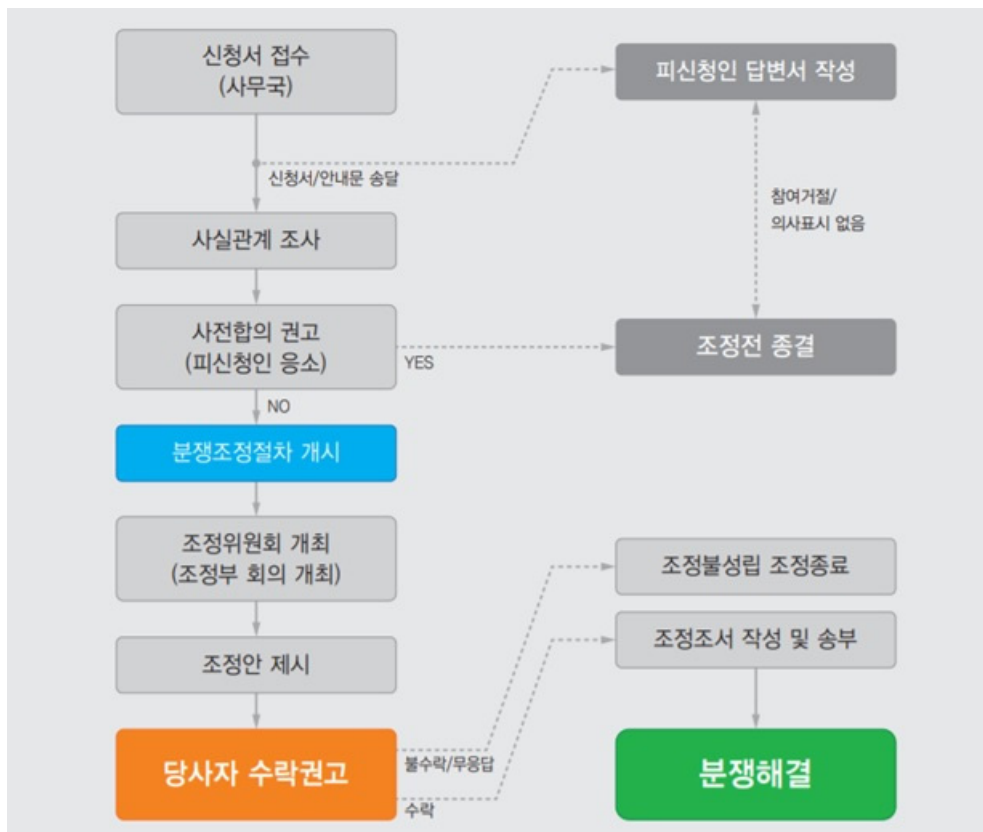
36) 동조 제24조 제1항.

37) 동조 제1항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다. 분쟁 조정절차

산업기술유출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³⁸⁾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1개월 단위로 3회에 한정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의 당사자에게 연장 기간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³⁹⁾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⁴⁰⁾

Ⅰ 그림 2 Ⅰ 조정 절차



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38) 동법 제26조 제1항.

39) 동법 제26조 제2항.

40) 동법 제26조 제3항.

3.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

가. 일반 사항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법적 대응을 지원⁴¹⁾하기 위한 제도이다. 위의 위원회들과는 달리 조정과 중재란 형식 모두를 사용한다. 조정이란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며, 중재란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부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조정의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합의 실패 시 중재, 소송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재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추후 소송이 불가하다. 2015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는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부처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직능위원 21인과 기술위원 29인으로 구성되어 있다.⁴²⁾ 직능위원의 경우 판사, 변호사, 변리사, 법학교수, 기술거래사, 유관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위원의 전문분야는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에너지·자원, 바이오·의료, 지식서비스, 기업자문, 회계·세무이다.

나. 법적 근거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28조와 시행령 제12조~18조 그리고 중소기업분쟁 조정·중재 운영세칙이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이다.

조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으며,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⁴³⁾ 조정은 사건의 당사자가 기술침해 및 손해배상 등이 반영된 조정내용에 대하여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며, 이 경우 해당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사건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⁴⁴⁾

중재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분쟁의 중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를 둘 수 있으며,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41)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42) 중소기업 기술보호ול타리 홈페이지(<https://www.ultari.go.kr/portal/psi/mediateInfo1.do>) 참조.

43)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44)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⁴⁵⁾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정은 중단된 것으로 보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⁴⁶⁾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위원장에게 중재를 담당할 중재부의 지정을 위임하는 방법’ 또는 ‘위원장이 제시하는 중재부 중 하나를 당사자의 합의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중재를 담당할 중재부를 선택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제2호의 방법(위원장이 제시하는 중재부 중 하나를 당사자의 합의로 선택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⁴⁷⁾

다. 분쟁 조정절차

조정과 중재는 관련 신청을 접수하면 조정부·중재부를 구성하고, 사건의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조정·중재 기일을 거쳐 조정안 제시 또는 중재판정을 하는 순서로 절차가 진행된다. 조정안 제시의 경우 조정부 구성이 완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리고 중재판정문 송부의 경우 중재부 구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그림 3 ▮ 조정·중재 절차

● 조정 절차



● 중재 절차



출처: 중소기업 기술보호율타리 홈페이지

45)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46)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

47)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5항.

III 저조한 운용 현황

기술 분야에서 국내 ADR제도의 운용현황은 매우 저조하다. 물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인 경우 다른 두 제도와 달리 상대적으로 활용이 저조하지 않은 상황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신청건수를 살펴보면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7년 기준 57건의 신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 성립률이 40% 정도에 미치고 있으며 2016년의 경우 17%로 매우 낮다. 이러한 낮은 조정 성립률은 결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의 활용 높이는 데 있어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와 산업기술 분쟁조정의 경우 운용 현황은 더욱 저조하다.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중재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신청건수를 보면 21건, 17건 19건으로 매우 낮으며 조정 성립률은 2017년 기준 22.2%로 역시 매우 저조하다. 이러한 비관적 현황은 산업기술 분쟁조정에 있어 더욱 열악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신청 건수는 3건, 3건, 0건이며 조정 성립율은 3년 연속 0%를 달성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들은 기업의 기술 침해 피해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술 침해 구제수단으로 ADR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는 상황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를 더욱 뒷받침하는 자료로써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실시한 ‘2015년 지식재산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경험은 95.4%이나, 조정을 활용한 경우는 1% 미만이라는 조사 내용이 있다.

표 7 | ADR제도 운용 현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8:12 자료 참고

제도	구분	2015	2016	2017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17	47	57
	조정 성립 (성립율)	8 (47%)	8 (17%)	22 (40%)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조정 진행* (신청)	7 (21)	14 (17)	9 (19)
	조정 성립 (성립율)	3 (42.9%)	6 (42.9%)	2 (22.2%)
산업기술 분쟁조정	신청	3	3	0
	조정 성립 (성립율)	0 (0%)	0 (0%)	0 (0%)

* 조정 전 합의, 조정 취하 등을 제외하고, 조정부 조정회의가 진행된 건수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의 경우 근래 현황 역시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2020년 10월 보도자료⁴⁸⁾에 따르면, 조정이 중단되는 비율이 높고 조정안이 제시되더라도 성립되는 비율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2015년부터 2019년 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조정안이 제시돼 성립된 경우는 전체 98건 중 16건에 불과했으며, 반면 조정안이 제시됐으나 성립되지 않은 비율은 36%였으며 조정 자체가 중단된 비율은 무려 41%에 이른다. 또한, 2019년의 경우 중재위 설치 이후 조정 비율이 가장 감소했는데 21건 신청 중 단 2건만 조정안이 성립되었고, 11건은 조정이 중단됐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소송이 부담스러워 중기부의 중재위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피신청인이 대기업일 시 조정이 성립한 경우는 2017년 2건(전체 11건), 2018년 0건(전체 6건), 2019년 2건(전체 11건)으로 저조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외의 경우 증가 추세에 있다는 최근 보도⁴⁹⁾가 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5건에서 작년 83건으로 늘어나는 등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증가 추세이다. 올해 상반기 누적신청은 이미 53건에 이르러 월평균 신청건수가 전년대비 약 27.7% 증가했으며, 조정 성립률도 50%에 이른다고 한다.

IV ADR제도 활성화에 관한 높은 수요

이러한 ADR제도에 관한 낮은 활용율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ADR제도 활성화에 관한 요구는 상당히 높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실시한 ‘2021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에 관하여 국내 기업들은 ‘조정, 중재 등 저렴하고 간소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와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기업 유형별로 구분하였을 경우, 중소기업은 두 번째로 선호(54.1%, 5항목 중 2위)하였고 중견기업은 첫 번째로 선호(59.7%, 5항목 중 1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도 첫 번째로 선호(56.0%, 5항목 중 1위)하는 정책지원으로 ADR제도를 꼽았다.⁵⁰⁾

48) 아시아 투데이, 2020 국감 중기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 연간 접수 건수가 20건 내외, 네이버뉴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1008010003800> (2020.10.08.19:00).

49) news1 뉴스, 특허청분쟁조정, 특허상표권 분쟁해결 대안으로 부상, 네이버뉴스, <https://www.news1.kr/articles/?4753524> (2022.7.26. 확인).

5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1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2021.12.), 81페이지.

표 8 | 2021년 국내 기업의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지원의 필요성

2021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자료 참고

보호 정책 및 제도	전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법률상담 등 정부 지원 사업 강화	56.1%	51.7%	57.7%	56.1%
조정, 중재 등 저렴한 ADR제도 활성화	54.4%	56.0%	59.7%	54.1%
	2위	1위	1위	2위
지식재산 침해 관련 형사처벌 강화	51.7%	53.0%	48.3%	51.8%
기업과 국민 인식제고	50.2%	54.5%	52.1%	50.0%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민사손해배상액 증액	49.4%	55.7%	50.5%	49.3%

註 (%)는 5점 척도(1: 전혀 안 필요, 5: 가장 필요)에서 [(4점과 5점으로 응답한 기업수)×100(%)]

또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실시한 ‘2020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에 관하여 국내 기업들은 ‘조정, 중재 등 저렴하고 간소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와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기업 유형별로 구분하였을 경우, 중소기업은 두 번째로 선호(48.8%, 5항목 중 2위)하였고 중견기업은 첫 번째로 선호(56.6%, 5항목 중 1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다른 정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요가 낮은 편이나, 국내 기업 전체로 유형을 구분하였을 경우에도 그 수요는 상당히 높은 편(49.1%, 5항목 중 2)임을 알 수 있다.

표 9 | 2020년 국내 기업의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지원의 필요성

2020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자료 참고

보호 정책 및 제도	전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컨설팅, 법률상담 등의 정부지원 사업	53.4%	42.8	55.4%	53.5%
조정, 중재 등 저렴한 ADR제도 활성화	49.1%	45.4%	56.6%	48.8%
	2위	3위	1위	2위
지식재산 침해 관련 형사처벌 강화	47.7%	45.6%	52.4%	47.5%
기업과 국민 인식제고	46.5%	43.7%	53.6%	46.2%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민사손해배상액 증액	45.9%	49.2%	50.2%	45.7%

註 (%)는 5점 척도(1: 전혀 안 필요, 5: 가장 필요)에서 [(4점과 5점으로 응답한 기업수)×100(%)]

ADR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요구는 비단 기업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이에 대한 대학, 연구소의 수요 역시 낮은 편이 아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수행한 ‘2021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효과적인 지식재산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정책수요에 대한 답변으로 국내 대학 공공(연)은 ‘대학·공공(연) 대상 컨설팅, 법률상담 등’이 70.9%로 가장 높았으며, ‘조정, 중재 등 저렴하고 간소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가 56.2%로 세 번째로 높았다.⁵¹⁾

5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1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2021.12.), 112페이지.

표 10 | 효과적인 지식재산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정책수요

2021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자료 참고

보호 정책 및 제도	전체	국공립대학	사립 대학	정부 출연(연)	기타 공공(연)
대학·공공(연) 대상 컨설팅, 법률상담 등	70.9%	82.5%	69.6%	68.4%	65.0%
학계, 연구계와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강화	65.3%	79.8%	65.8%	57.9%	46.9%
조정, 중재 등 저렴한 ADR제도 활성화	56.2%	65.1%	55.4%	52.6%	52.3%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49.3%	53.0%	50.1%	47.4%	39.7%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액 증액	48.7%	59.0%	46.9%	52.6%	44.1%

註 (%)는 5점 척도(1: 전혀 안 필요, 5: 가장 필요)에서 [(4점과 5점으로 응답한 기업수)×100(%)]

ADR제도 활성화에 관한 국외의 움직임도 매우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유럽, 중국, 일본의 최근 모습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1년 7월, 영국지식재산청(UKIPO)은 지식재산 집행 관련 이슈에 관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ADR제도에 관한 이용률이 낮은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안 도출 계획 발표하였다. 2021년 3월, 유럽지식재산청(EUIPO)은 ADR제도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당사자가 된 이의제기 및 무효·취소 사건에 대해서 효율적 분쟁해결(Effective Dispute Resolution, EDR)을 운영해 EDR 개시 후 48시간 내에 분쟁을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발표하였다. 2020년 3월, 일본은 민사사법제도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사 분쟁에 관한 ADR의 개혁을 위해 필요한 검토실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2019년 10월, 중국은 ‘하이난 자유무역구 지식재산권 중재·조정·화해 센터 설립하여 ADR제도의 활성화를 발표하였다.

이렇듯 ADR제도에 관심은 국내외 모두 높고 관련 활동은 활발하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지금까지 ADR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실시되고 정책안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ADR제도 활성화에 대한 수요는 높다. 지금까지의 활성화 방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여전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일까?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함으로써 동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점검해 보기로 하겠다.

법·제도 연구
기술 분쟁해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ADR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중소기업의 ADR 활용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제3장

선행 ADR 연구에 관한 검토

제1절 개요
제2절 낮은 활용의 원인
제3절 문제점 해결방안
제4절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제1절

개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 관련 분쟁의 경우 기술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격과 소송제도의 내재적 한계로 인하여 ADR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ADR의 활용에 관하여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ADR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요구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동 제도에 관한 활용은 저조하지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수요가 여전히 높다는 사실은, 소송제도가 ADR제도보다 기술 관련 분쟁에 상대적으로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이는 ADR제도가 지식재산 관련 분쟁해결 수단으로는 매우 적합하지만 자체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거나 이를 운영하는 주체에 부족한 모습이 있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ADR제도와 이를 운영하는 기관을 살펴봄으로써 활용저조에 관한 실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관한 개선방안을 도출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타당성이 동 연구를 수행하는 본질적인 이유이다. 동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아쉬운 모습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과거 지식재산 관련 ADR제도의 도입에 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 현재 낮은 활용에 관한 원인 분석이나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주안점을 두어 이루어진 연구는 소수뿐임을 알 수 있다.

관련 연구가 많지 않다는 아쉬움이 전부가 아니다. 충분치 않은 연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내에 이루어진 연구는 더욱 부족하다는 것은 연구의 진행을 어렵게까지 하였다. 연구 수행 과정에서 관련 연구들을 조사해 본 결과, 2010년 대 초반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이 있으나 그 이후 지속적인 연구 활동들은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8년도 이후 이루어진 연구와 정부 단위의 논의가 3건⁵²⁾ 있다는 사실이다.

관련 연구가 3건에 불과하더라도 각계각층에서 깊은 논의와 고민을 거쳐 탄생된 연구이기에 그 자체로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장에서는 최근 이루어진 연구와 정부단위의 논의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제점들과 각각의 해결방안에 관하여 점검해 보고자 한다. 연구 2건 중 하나는 2018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에서의 발표를 기반으로 같은 해에 실시된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2018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분야 분쟁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논의를 기반으로 2020년에 실시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들과 논의가 과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보다 간결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52) 김시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노력의 평가와 과제(2018); 조용순, 산업보안 ADR제도 개선방안 연구(2020)가 최근 관련 연구 2건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지식재산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2018)이 정부 단위의 최근 논의이다.

제2절

낮은 활용의 원인

보편적으로 선행 연구들은 활용 저조에 대해 다음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정리할 수 있다: 1) ADR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 2) 사무국과 조정위원회의 낮은 역량, 3) 조정제도의 내재적 한계. 이러한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기준으로 구성하면서 그 외 연구들의 내용들을 추가 및 재편성하여 정리하고 살펴보도록 한다.

I ADR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

ADR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낮은 활용에 대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즉, 기술 침해에 관한 사례는 많으나 이러한 침해의 대응수단으로써 ADR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특히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수행한 2015년 지식재산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지재권 침해 피해 경험에 대해서는 95.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이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써 ADR을 활용한 경우는 1%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2018 사법연감에서는 우리나라 지방법원 민사조정사건 중 당사자가 직접 조정을 신청하는 비율이 약 13%에 지나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수치들을 근거로 하여 ADR제도 활용이 매우 저조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저조 현황에 대한 이유로 ‘조정제도를 잘 몰라서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⁵³⁾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ADR제도의 가치 및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여 ADR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이 적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인식제고를 위한 안내·홍보 활동 강화 및 현장과의 접점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53)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2018), 4페이지.

II 사무국과 조정위원회의 낮은 역량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라 기술과 문화 트렌드의 변화는 그 속도가 매우 빨라지며 이에 따라 분쟁의 대상이 되는 기술 역시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를 수행할 조정위원 수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ADR제도에 대한 신뢰 확보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조정위원회와 사무국 역량이 지금보다는 더욱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이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등의 경우 조정 관련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내용을 참고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결국 사무국과 조정위원회가 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역량이 낮으므로 이를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III 조정제도의 내재적 한계

조정제도의 내재적 한계가 원인이라 함은 결국 조정제도의 실효성이 과연 있는가라는 의문과 궤를 같이하는 부분이다. 조정은 양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으로써 결국 양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참여에 관한 강제력이 존재하지 않아 피신청인의 불응 또는 불참의 경우가 빈번함을 지적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2013년부터 2018년 7월까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조정 불성립 건수 124건 대비 조정 불응 건수가 90건으로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도출된 조정안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결국 법원 소송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조정절차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에 이러한 조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자체적 한계는 감정, 사실조사 등 조정절차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극복되어 결국 동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조정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ADR에 관한 신뢰를 확보하여 피신청인의 참여를 유인하고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이 되어야 한다.

제3절

문제점 해결방안

I 낮은 인식에 대한 해결방안

낮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 내용들은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이었다. 첫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영업 비밀을 기술상의 정보와 관련된 영업비밀로 한정시켜 그 대상의 범위를 좁게 한 사실을 지적하고, 이에 조정 대상을 영업비밀 그리고 부정경쟁행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는 이미 발명진흥법 제41조 제1항에 반영된 내용으로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다. 둘째, 산업기술 분쟁 조정행위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조정 대상을 넓히고 분쟁조정 행위 대항을 ‘유출’에서 ‘침해·유출’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 이 역시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시제정 및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서 이미 반영된 내용으로 역시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다.

1. 표준계약서상의 ADR 명시

기술이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이들 중 실시계약, 기술개발계약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이나 산업별 협회 등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 등에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써의 ADR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제시된다.⁵⁴⁾

즉, ADR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표준계약서에 ADR제도 이용에 관한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은 2013년도 연구에서부터 이미 주장된 방안으로 이제는 일부 표준계약서(디지털 콘텐츠 표준계약서, 저작권 표준계약서, 출판 표준계약서 등)에서 이미 분쟁해결수단으로써의 ADR을 명시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ADR 활용 문구를 표준계약서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활용을 제고하고자 한다.

54) 손승우, 지식재산 분쟁해결을 위한 ADR의 활용과 정책 방향, 지식재산정책 Vol.14(2013), 32페이지.

표 11 | ADR 활용 문구 예시

일반적 문구	ADR 활용 문구
<p>제00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협약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p>	<p>제00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협약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u>발명진흥법에 의하여 설치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u>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p>

2. 설명회 및 홍보 추진

ADR제도에 관한 체계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지식재산 분야 ADR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ADR제도가 아닌 소송제도를 활용한다는 현황 지적을 기반으로 도출된 방안이다. 주요 선진국의 ADR 기관들은 대중의 인식제고를 위해 방송·인터넷·책자·설명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ADR제도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관련 홍보 활동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⁵⁵⁾ 그러므로 분쟁해결 수단으로써의 ADR 활용이 저조하며, 특히 지역 소재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ADR 관련 정보나 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시기적절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조정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활성화하여 잠재적 이용자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식제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방송, 신문, 전광판, 대중교통 광고, 온라인 배너, SNS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국민이 ADR를 손쉽게 인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더하여 관련 세미나, 포럼, 컨퍼런스, 설명회 등에 참여하여 ADR제도를 적극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인식제고를 달성하는 방안이다.

3. 법원조정 연계를 통한 국민인식 제고

분쟁 발생 시 조정제도에 대한 신뢰 및 인식이 부족하여 결국 기술침해 피해자는 법원을 분쟁해결 수단으로 사용하는 상황이 일반적이라는 인식에서 도출된 방안이다. 법원 조정과 행정기관의 조정을 연계하여 동 제도의 운영기관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와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안으로 조정 기

55) 손승우, 상계서, 31~32페이지.

관과 연계하는 법원 및 조정 기관으로 이관되는 사건 수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 중소 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의 경우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동부지법과 연계 중이므로 이러한 모습을 살펴보고 착안점을 발굴하여 연계를 실시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4. 심판사건과의 연계를 통해 유연성 제고

산업재산권 침해에 관한 구제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침해금지, 신용회복, 부당이득반환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구제수단은 결국 일반민사소송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소송과 관련된 분야는 산업재산권 관련 ADR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통하여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산업재산권 무효·취소·권리범위확인과 같은 분쟁은 ‘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을 통한 절차로만 해결된다.⁵⁶⁾ 그렇기 때문에 발명진흥법 제44조는 ‘분쟁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허심판 시 당사자들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심판은 중지되지 않고 진행되며 신청된 조정 역시 별개로 진행된다. 이로 인해 당사자는 각각의 분쟁해결 수단에 대응해야 하며 결국 이는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심판사건의 경우 이를 조정을 통해 처리하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고 침해소송이 결부된 경우 소송 종결도 가능하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판 사건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로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의 조기해결 유도 및 분쟁대응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⁵⁷⁾이 제시되었다. 즉, 심판-조정 연계 시 심판기록을 조정 위원회에 회부하고 심판합의체 또한 조정부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심판 절차를 중지하여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며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 심판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정 과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5. 온라인 시스템 개선 및 ODR 활용

현재 조정제도 운영기관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접수 및 처리상황 조회 등 실질적인 서비스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문체부 산하 조정위원회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접수 및 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술 및 산업재산권 관련인 경우 제도에 관한 소개 정보

56)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세칭출판사 제17판(2018), 139페이지.

57) 영국의 경우 특허심판권이 조정에 적합한 분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IPO 조정서비스를 권유하는 등 심판과 조정이 연계되어 있다. 조용순, 산업보안 ADR제도 개선방안 연구 - 산업보안 관련 법률 및 주요국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0권 제1호(2020), 140페이지.

만 게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온라인 접수 및 처리 등 시스템 개선 방안을 통해 이용자의 편리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조정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구현하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⁵⁸⁾

온라인 시스템 개선과 관련하여 홈페이지상의 기능을 개선 및 추가하는 방안 이외에도 ODR (Online Dispute Resolution, 온라인분쟁해결수단)의 적용방안도 제시된 바 있다. 이는 온라인 상에서 컴퓨터 등 매체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송뿐만 아니라 이미 ADR 등 다양한 분쟁해결절차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국제상사, 지식재산권, 개인정보보호, 도메인이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ODR 방식은 채팅룸 방식, 화상회의 방식, 비공개 게시판 방식, 이메일 방식, 자동화된 협상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며, 오프라인 분쟁절차의 일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⁵⁹⁾ 그러나 ODR은 단순히 온라인을 통한 ADR제도 운영이 아니다. 이는 기존 ADR의 장점인 신속성, 저렴한 비용, 편의성, 접근성 등 효과를 보다 극대화하고 있다.⁶⁰⁾ 그러므로 ODR은 주로 소액 분쟁에 적합하며, 원격지에 있는 분쟁당사자들이 분쟁해결의 일부절차로써 활용한다면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⁶¹⁾ 또한, 물리적 거리나 이동시간의 소요 문제뿐만 아니라 관할법원 및 준거법으로 인한 오프라인상의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에 적절한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⁶²⁾ 이러한 부분은 국내 기업 간의 분쟁을 넘어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분쟁에 매우 유용할 것이기 때문에 ODR 제도 적극 활용이 제시되었다.

II 낮은 역량에 대한 해결방안

1. 유연한 조정부 구성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의 경우 심판-조정 연계 및 조정대상 확대에 따라 분쟁 수요 증가를 대비한 인력 및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원 수 확대(40명→100

58) 수수료 입금 완료, 조정부 지정 완료, 조정 기일 안내, 결과 통보 완료 등.

59) 이하 자세한 내용을 위하여, 손승우,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규범 모델 연구[1] - ODR에 관한 국제 규범 동향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11.6. 참조; E-Commerce and ODR 국제세미나, UNCITRAL·한국소비자법학회·한국외국어대학교, 2012.9.20~21. 참조.

60) 손승우, 전게서, 32페이지.

61) 손승우, 상게서, 33페이지.

62) 사법정책연구원,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연구(2018), 10페이지.

명),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해결을 위한 1인 조정부 구성 추진을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인 조정부는 조정회의 이전 당사자 간 합의 의사가 명백한 사건이나 손해배상액이 소액인 사건을 담당하여 분쟁해결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2. 조정위의 전문성 강화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의 경우 위원 배정 시 분쟁이 발생하는 기술 분야의 빈도수를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배정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에서 방안을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2015~2017년 정보통신 분야는 25건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분야 기술위원은 4명, 같은 기간 동안 바이오, 의류 분야는 1건 발생하였는데 기술 위원은 1명을 배정하였다. 이러한 배정은 현실과 상당히 괴리가 있으며 빈도수가 높은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위원으로 하여금 부담감만 가중시킬 뿐이다. 이에 조정 수요를 조사하여 이에 부합하는 전문가의 비중을 분야별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 사무국 인력 확충과 법적 지위 안정화

사무국은 접수된 분쟁 사건의 초기 대응, 사실 관계 파악, 피신청인 참석 유도 등 조정제도의 운영 전반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 사건 증가에 따라 조정 제도 운영 및 사무국의 업무 부담⁶³⁾이 늘어나고 있어, 역량 강화 및 적극적 조정제도 운영에 한계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에 사무국 인력 증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무국 지위의 법적 안정화 방안이 제기되었다.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3조 제7항⁶⁴⁾과 동법 제16조 제4항 제6호⁶⁵⁾를 통해 사무국의 지위와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발명진흥법 제41조 제6항⁶⁶⁾을 통해 사무국의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는 그러하지 못하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가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 중이지만, 관련 법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오로지 위원회에 관한 사항만 열거하고 있다.⁶⁷⁾ 그러므로 이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을 활성화 방안으로 제기하고 있다.⁶⁸⁾

63)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의 경우 영업비밀 등 분쟁조정 대상 확대, 심판-조정 연계 추진 등이 있다.

64)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회에 사무국을 둔다.

65)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지원이다.

66)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사무국을 둔다.

6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68) 조용순, 전게서, 134페이지.

4. 기술·지식재산 분야 조정 교육 운영

WIPO ADR 센터나 대산상사중재원 같은 국내외 ADR 기관이 ADR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식재산이나 기술 분야의 특수성이 반영된 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심화 교육)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즉, 지식재산이나 기술 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분쟁조정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조사서 작성, 지식재산권 법률, 협상 등 조정 실무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설계 및 기관별 조정사례 공유 등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5. 조정위원회 정보·경험 공유의 장 확대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은 비상근으로 정보 공유 및 전문성·역량 강화에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위원회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우수 분쟁해결사례, 노하우 공유, 온라인을 통한 조정 현황 및 사례 등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유의 장을 통해 시의성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의 조정 분야 전문성을 제고하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III 조정 내재적 한계에 대한 해결방안

1. 조정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대부분 기술 침해 피해자는 중소기업으로 신속하고 저비용이 투입되는 조정을 분쟁해결 수단으로 선호하고 신청하지만, 일부 대기업의 경우 소송을 선호하고 합의나 참여에 매우 소극적인 상황을 지적하며 도출된 방안이다. 실질적으로 2019년 1월에 시행된 안으로 기술 분쟁 조정에 합의한 경우 대기업 대상 동반성장지수평가⁶⁹⁾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69)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의 수준을 계량화된 지표로 평가 및 공표하여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한다.

2. 조정 합의 시 사실 조사 및 권고 유예

기술 침해 관련 분쟁은 중소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만큼의 심각한 경영상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ADR제도는 강제력이 없어 피신청인의 활용 유인으로는 제한이 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기술 침해 분쟁 시 조정·중재 제도를 이용하여 합의될 경우 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사실조사 및 권고⁷⁰⁾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강제적 조사나 권고 이전에 자율합의에 따른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3. 자료제출 위반 제제 및 사실조사제도 도입

우선 자료제출에 관한 의무에 관하여 각 조정제도는 관련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27조는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보호법 제27조 역시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발명진흥법 제45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원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 표 12 ▮ 자료제출과 사실조사에 대한 제도별 편성

구분	산업기술	중소기업기술	산업재산권
자료제출	산업기술보호법 제27조 (강제 규정)	중소기술보호법 제27조 (강제 규정)	발명진흥법 제45조의2 (임의 규정)
사실조사	X	X	발명진흥법 제45조의2

7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중소기업자 등이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조정·중재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피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고 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첫째, 산업기술과 중소기업기술의 경우 자료제출이 강제 규정화되어 있는 반면 산업재산권의 경우 자료제출에 관하여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위원회는... 요구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는 부분을 강제 규정화하여 다른 2개의 조정제도와와의 통일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⁷¹⁾

둘째, 산업기술과 중소기업기술 관련 ADR의 경우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강제 규정화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의무 위반 시 제재에 관한 내용은 어디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동 강제 규정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관련 제재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방안⁷²⁾이 제기된다.

셋째, 사실조사에 관한 적용이 산업기술과 중소기업기술 관련 ADR에 필요하다. 산업재산권 ADR의 경우 발명진흥법 제45조의2를 통하여 위원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며 의무화하지 않은 자료제출의 사항을 보완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료제출 사항을 강제 규정화하고 있는 산업기술과 중소기업기술 ADR이라 할지라도 관련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이기에 ‘사실조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완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⁷³⁾

4. 공적 감정기관 활용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5조 제5항은 ‘조정부는 제3항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건의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의 당사자는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조정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당사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당사자는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분쟁 대상 기술의 가치평가(감정)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공신력 있는 기관의 기술 가치 평가 등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등의 산정에 있어 당사자가 수급할 수 있고 분쟁의 해결이 수월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분쟁 대상에 관한 평가가 중립성이 담보되는 공적기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산업기술과 산업재산권 관련 ADR제도에도 도입되는 방안⁷⁴⁾이 제기된다.

71) 산업재산권 ADR의 경우 사실조사 제도의 도입을 통해 자료제출의 의무화 결여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2) 조용순, 전게서, 136페이지.

73) 조용순, 상게서, 136페이지.

74) 조용순, 상게서, 136페이지.

5. 참여의 성실의무화 및 위반 제재

조정절차 개시 후 당연히 신청인의 참여는 매우 높으나 피신청인의 참여는 매우 저조하고, 이러한 참여 저조 모습은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조정제도의 낮은 활용에 대한 여러 주요 요인들 중 하나이다. 물론 관련법은 당사자의 출석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발명진흥법 제45조의 경우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7조 제2항은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부 또는 중재부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강제규정이 아니며 더욱이 ‘성실의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이에 관한 ‘성실의무화’ 작업이 방안으로 요구된다. 산업기술보호법 제26조 제4항은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중소기업기술과 산업재산권 조정의 경우도 산업기술보호법과 같은 모습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⁷⁵⁾ 여기에 추가적으로 성실의무화를 하더라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등의 규정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⁷⁶⁾이 있다. 의무만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제재 내용이 부재하는 경우 그저 선언적 의미에만 관련 내용이 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롯된 의견이다.

75) 조용순, 상계서, 137페이지.

76)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737 검토보고서, 6~7페이지.

제4절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우선, 전반적으로 ADR제도 활용 저조에 관한 원인 분류는 매우 현실적이고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제도에 관한 국민들의 낮은 인식’,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의 낮은 역량’ 그리고 ‘제도 자체가 지니고 있는 한계’라는 세 가지 범위로 저조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관련 연구들의 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각기 다섯 가지의 개선방안들로 정리될 수 있다.

표 13 | ADR 활용 저조 원인과 개선방안

ADR 활용 저조 원인	개선방안
ADR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	① 표준계약서상의 ADR 명시 ② 설명회 및 홍보 추진 ③ 법원조정 연계를 통한 국민인식 제고 ④ 심판사건과의 연계를 통해 유연성 제고 ⑤ 온라인 시스템 개선 및 ODR 활용
사무국과 조정위원회의 낮은 역량	① 유연한 조정부 구성 ② 조정위의 전문성 강화 ③ 사무국 인력 확충과 법적 지위 안정화 ④ 기술·지식재산 분야 조정 교육 운영 ⑤ 조정위원회 정보·경험 공유의 장 확대
조정제도의 내재적 한계	① 조정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② 조정 합의 시 사실조사 및 권고 유예 ③ 자료제출 위반 제재 및 사실조사제도 도입 ④ 공적 감정기관 활용 ⑤ 참여의 성실의무화 및 위반 제재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에 관한 내용들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도출되고 취합된 방안들이다. 그러므로 그 자체적으로 큰 의미가 있으며, 본 보고서 저자의 부족한 지식과 이해력으로는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가능하면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시의성이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하도록 한다.

I ADR에 대한 충분한 인식

2013년도 연구에서부터 2020년 활성화 방안에까지 ADR에 관한 낮은 인식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제고를 위해 홍보 및 교육활동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최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기되어 오고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과연 ADR제도에 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을까?

물론, 일반 국민들의 ADR제도의 인식수준은 낮을 수 있다. 그러나 기술침해의 피해자의 경우 ADR제도에 관한 인식수준이 낮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침해 피해의 당사자가 되는 시점부터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최대한 조사 및 검토해 볼 것이다. 이러한 조사 및 검토 과정 속에서 ADR제도의 활용 여부에 관한 고민이 없을 수는 없다.

실질적으로 기술침해와 관련한 중소기업 대표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하면 증거만 뺏길 수 있으니 차라리 하지 말라고 한다.’는 내용⁷⁷⁾을 통해서 ADR제도 활용 저조는 인식이 아닌 제도 자체적 문제가 원인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유추를 더욱 사실로 확실시 해 주는 조사 결과 역시 존재한다.

2021년 경청(재단법인)이 조사기관 Gallup을 통해 1,000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러한 유추가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4 | 피해 구제기관 인지도 및 이용 여부⁷⁸⁾

피해 구제기관 인지도			피해 구제기관 이용여부		
공정거래위원회	인지	95.5%	공정거래위원회	이용	4.3%
	비인지	4.5%		비이용	95.7%
중소벤처기업부	인지	92.0%	중소벤처기업부	이용	10.4%
	비인지	8.0%		비이용	89.6%
특허청	인지	95.5%	특허청	이용	7.8%
	비인지	4.5%		비이용	92.2%

경청, Gallup, 2021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참조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침해 피해의 상황에서 구제기관에 관한 인지도는 매우 높다. 부처마다 조금의 차이는 존재하나 인지도는 모두 90%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반면 이용 여부는 비이용이 모두 90%를 상회하고 있다. 이제는 ADR제도에 관한 국민들의 낮은 인식이 제도 활용 저조

77) 이데일리, 中企 토대 빼앗는 대기업 기술탈취, 자식 세대엔 없어야, 네이버뉴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94966632263648&mediaCodeNo=257&OutLnkChk=Y> (2022.03.15.).

78) 경청, Gallup, 2021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40페이지.

현상을 초래하였다고 연결하기에는 인과관계가 매우 부족하다.

물론 지금까지 충분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왔기 때문에 달성한 높은 인지도이다. 이 부분은 인정하나 ADR제도 활용의 낮음은 국민의 인식 정도에 따른 결과보다는 ADR제도 자체나 이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II 조정위원회의 실질적 개선방안 필요

ADR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인 사무국과 조정위원회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나, 이들의 '낮은 역량'이 문제라고 판단하는 부분과 '역량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 소액이거나 간단한 사안의 경우 '1인 조정부'를 구성하는 안과 '사무국 인력 확충과 법적 지위 안정화'의 경우 실질적인 개선방안이라 판단한다. 그러나 이외 개선 방안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조정위의 전문성 강화'이다. 조정위원회는 ADR제도를 운영하는 핵심 주체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전문성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기술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며 그 범위 또한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기술 관련 분쟁에 관하여 조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의 기술에 대한 전문성 강화는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사무국 인원수 증가 및 교육 방안'과 '조정위원회 위원 증가 방안', '조정위원회 정보 및 경험 공유의 장 확대 방안'이 실질적인 역량제고 방안이라는 데에는 의구심이 든다. 단순히 인원수를 늘린다고 해서 전문성이 강화되는 것인가? 단순히 위원수를 최대 40인에서 최대 100인으로 늘린다고 해서 지금 기술이 보여주고 있는 다양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가? 분명히 그렇지 않다. 단순한 인원수 증가나 1회성 경험 공유의 장을 통해 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거나 제고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ADR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 ADR제도의 중심축이 무엇이고 또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본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하다. 본인은 동 제도의 중심축은 '조정위원회'이고 이것이 본질적·실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개선의 가이드라인은 동 제도의 주요 신청자인 '중소기업(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의견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다음 장에서는 '조정위원회'를 '중소기업의 의견'에 따른 '조정위원회' 개선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해 보고, '조정위원회 이회의 사항'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견'을 기타 개선방

안으로 구성해 보면서 보다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지만, ADR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수를 증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뒤에서 검토해보겠다. 이는 분쟁 등과 같은 법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이 충분한지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한 의견으로 충분한 의견은 12% 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나, 부족하다는 의견이 39%에 이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검토일 것이다. 이에 대해 간략히 미리 결론부터 밝히자면 오히려 통합을 통한 축소가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⁷⁹⁾

III 행정형 ADR의 유지 필요

조정제도는 강제력이 없다. 절차에 대해서도 강제력이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강제력이 없다. 이것이 바로 ADR이 지니고 있는 자체적 한계이다. 이러한 한계들을 관련법 개정을 통해 극복해 나가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이다. 산업기술과 관련해서 ‘유출’에서 ‘침해·유출’로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 조정 대상을 ‘경영상 정보를 포함하는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로 확대한 개정 모습은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조정 합의 시 사실조사 및 권고 유예’, ‘자료제출 위반 제제 및 사실조사제도 도입’, ‘공적 감정기관 활용’, ‘참여에 관한 성실의무화 및 위반 시 제제 도입’ 등의 의견들은 하루 빨리 관련법 내의 내용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이렇듯 제도 자체의 한계를 인정하고 제도의 틀 안에서 개선의 모습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조정제도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를 ‘사법형 ADR제도’를 통해 해결하다는 의견⁸⁰⁾도 존재한다. 또한 사법형 ADR은 행정형 ADR에 있어서 제기되는 관련 행정기관과 위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등 문제에 대한 한계의 좋은 대안으로 미국, 영국, 중국, 일본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도⁸¹⁾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사법형 ADR제도가 실질적인 해결방안인가?’, 둘째, ‘사법형 ADR제도를 통해 행정형 ADR이 의심받고 있는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첫째, 사법형 ADR제도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인가? 그렇지 않다. ADR제도의 도입 배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쟁의 대상이 ‘기술’인 경우 여러 부분에

79) 자세한 설명은 본 보고서 84페이지의 ‘조정위원회 통합에 관한 의견’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80) 조용순, 전게서, 139페이지.

81) 사법정책연구원, 우리나라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36페이지.

서 ‘소송제도’가 부적합하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ADR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그리고 이 ADR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제도 본연의 것이다. 이를 운영하는 주체가 행정부라서 발생한 원인은 아닌 것이다. 이를 운영하는 주체를 사법부로 변경한다고 하여 ADR제도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가 자연스럽게 극복되는 것은 아니다. ADR제도 본연의 한계는 관련법이나 시행규칙을 변경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법원 조정과의 연계’, ‘심판사건과의 연계’ 등을 통해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둘째, 사법형 ADR제도를 통해 행정형 ADR의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이 역시 그렇지 않다.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은 과연 법원을 정부 및 산하기관에 비해 더욱 신뢰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가 사실이다. 물론 사법정책연구원이 인용한 해외의 사례에서는 법원의 신뢰도가 정부(산하기관)보다 높은 경우라서 저러한 의견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여 당연히 우리나라도 같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 판단한다면 커다란 오류를 범하게 된다. 중소기업이 법원과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공정성 인식은 아래와 같다.

표 15 | 절차의 공정성 인식⁸²⁾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절차에 대한 공정성 정도			
행정부 (정부 및 산하기관)		사법부 (법원)	
3.07점(5점 평균)		2.99(5점 평균)	
공정	27.9%	공정	29.0%
보통	50.4%	보통	41.4%
불공정	21.7%	불공정	34.3%

경청, Gallup, 2021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참조

표 16 | 결과의 공정성 인식⁸³⁾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결과에 대한 공정성 정도			
행정부 (정부 및 산하기관)		사법부 (법원)	
3.03점(5점 평균)		2.92점(5점 평균)	
공정	26.9%	공정	24.5%
보통	49.4%	보통	44.9%
불공정	23.7%	불공정	30.6%

경청, Gallup, 2021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참조

82) 경청, Gallup, 2021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26페이지.

83) 경청, Gallup, 2021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27페이지.

‘절차’와 ‘결과’에 대한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은 행정부(정부 및 산하기관)의 공정성이 더욱 높다고 응답⁸⁴⁾하였다. 5점 평균에 대한 점수에서도 ‘절차’와 ‘결과’ 두 부분 모두 행정부가 높았다. 또한 ‘절차’의 경우, 행정부가 공정하다는 의견은 27.9%,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21.1%로 ‘공정하다는 의견’이 ‘불공정하다는 의견’보다 높았다. ‘결과’의 경우 역시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그렇지 못하다.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공정하다는 의견’보다 각각 3.2%p, 6.1%p 높게 나왔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적어도 중소기업으로 부터 ‘법원’이 ‘정부나 산하기관’에 비해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를 더욱 강하게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가 존재한다.

▮ 표 17 ▮ 절차와 결과에 있어 전관예우 영향력 인식⁸⁵⁾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절차와 결과에 대한 전관예우 영향 정도			
행정부 (정부 및 산하기관)		사법부 (법원)	
없다	7.6%	없다	6.6%
보통	39.1%	보통	26.9%
있다	53.4%	있다	59.3%

경청, Gallup, 2021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참조

‘절차와 결과에 대해 전관예우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로 ‘영향력이 있다’는 의견에 관하여는 사법부는 66.5%로 행정부의 53.4%보다 13.1%p 높다. 그러나 ‘영향력이 없다’에 대한 결과는 행정부는 7.6%로 사법부의 6.6%로 1%p 높았다.

정확히 ‘독립성’과 ‘중립성’에 관한 설문조사는 아니다. 그러나 ‘공정성’과 ‘전관예우 영향력’에 관한 조사를 통해 ‘독립성’과 ‘중립성’에 관한 정도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단연코 이러한 윤리적 항목에 있어 법원이 정부와 산하기관보다 더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84) ‘기업에 필요한 업무(인허가 등 행정처분, 민원, 재판, 수사, 기소, 행정조사 등)를 처리하는 절차적인 과정(결과)에서 특정 기업에게 특혜나 차별을 두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응답이다.

85) 경청, Gallup, 2021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28페이지.

IV **소결**

이러한 검토의견을 종합한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8 | ADR 활용 저조 원인과 개선방안(검토 의견)

ADR 활용 저조 원인	선행연구상의 개선방안	검토 의견
ADR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제고는 충분
사무국과 조정위원회의 낮은 역량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연한 조정부 구성 ② 조정위의 전문성 강화 ③ 사무국 인력 확충과 법적 지위 안정화 ④ 기술·지식재산 분야 조정 교육 운영 ⑤ 조정위원회 정보·경험 공유의 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위원회의 역량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필요 → 인원수 증가, 교육 등의 내용은 실질적이지 않음
조정제도의 내재적 한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조정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② 조정 합의 시 사실조사 및 권고 유예 ③ 자료제출 위반 제재 및 사실조사제도 도입 ④ 공적 감정기관 활용 ⑤ 참여의 성실의무화 및 위반 제재 ⑥ 표준계약서상의 ADR 명시 ⑦ 법원조정 연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 ⑧ 심판사건과의 연계를 통해 유연성 제고 ⑨ 온라인 시스템 개선 및 ODR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틀 속에서 조정제도의 내재적 한계 극복 필요 → 사법형 ADR제도 불필요 → 관련법 개정을 통한 극복 필요(제도의 효율성 및 통일성 확보 필요)

* 본 보고서 46페이지의 표를 기반으로 재구성된 것으로, 검토를 통해 원인과 개선방안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내용은 음영 처리 하였다.

법·제도 연구
기술 분쟁해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ADR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중소기업의 ADR 활용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제4장

ADR 활성화 방안

제1절 개요

제2절 조정위원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방안

제3절 조정과 소송의 관계

제4절 기타 제언

제1절

개요

ADR의 조정 성립과 제도 활성화 부분에 있어 조정위원의 중요성은 상당하다. 조정위원은 분쟁 당사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조정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물론 분쟁에 대한 해결은 당사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당사자는 자기책임원칙하에 분쟁해결점을 찾아나가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의 조정위원은 이러한 이론보다 더욱 무겁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정위원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의 수행자가 되어야만 한다. 당사자의 보조자 역할에 그치지 말아야 하며, 당사자들 사이에서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협상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이끌어내야 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조정위원은 분쟁의 대상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분쟁의 해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끌어내야만 한다. 이러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독립성'과 '전문성'이다.

여기서의 '전문성'은 분쟁 대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조정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문성은 조정의 성립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제고하는 방안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조정위원은 당사자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되고, 이렇게 형성된 신뢰감을 기반으로 조정 성립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정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외에도 시효중단 이슈와 함께 기타 개선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조정위원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방안

I 독립성·중립성 제고 방안

1. 현황

ADR제도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라도 일정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조정 성립이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ADR을 운영하는 기관은 준사법기관이다. 어찌되었던 사법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면 조정위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어야만 당사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조정위원은 조정절차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분쟁 당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되고,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의 모든 절차에서 양 당사자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2013년 국가 지식재산위원회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관련 조정제도를 경험한 응답자의 23%가 소송절차에 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조정제도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허청에 소속되어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1%가 독립성에 관한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였다고 한다.⁸⁶⁾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2021년 재단법인 경청이 실시한 ‘2021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기 정보와 다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설문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 등의 이외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결과가 다를 수는 있으나, 결국 분쟁 피해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점을 생각해 본다면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독립성 정도가 대기업이 생각하는 독립성 정도보다 더욱 보수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여전히 든다. 그러므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독립성 부분에서 더욱 낮은 점수를 받는 결과가 도출됨이 당연할 것이다.

결국 상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차’와 ‘결과’에 대한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은 행정부(정부 및 산하기관)의 공정성이 더욱 높다고 응답하였다. 5점 평균에 대한 점수에서도 ‘절차’와 ‘결과’ 두 부분 모두 행정부가 높았다. 그리고 또한 ‘절차’의 경우, 행정부가 공정하다는 의견은

86) 김시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노력의 평가와 과제,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42권(2018.9.), 12페이지.

27.9%,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21.1%로 '공정하다는 의견'이 '불공정하다는 의견'보다 높았다. '결과'의 경우 역시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그렇지 못하다.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공정하다는 의견'보다 각각 3.2%p, 6.1%p 높게 나왔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적어도 중소기업으로부터 '법원'이 '정부나 산하기관'에 비해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를 더욱 강하게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가 존재한다.

'절차와 결과에 대해 전관예우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로 '영향력이 있다'는 의견에 관하여는 사법부는 66.5%로 행정부의 53.4%보다 13.1%p 높았다. 그러나 '영향력이 없다'에 대한 결과는 행정부는 7.6%로 사법부의 6.6%로 1%p 높았다.

정확히 '독립성'과 '중립성'에 관한 설문조사는 아니다. 그러나 '공정성'과 '전관예우 영향력'에 관한 조사를 통해 '독립성'과 '중립성'에 관한 정도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단연코 이러한 윤리적 항목에 있어 법원이 정부와 산하기관보다 더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소송절차에 대한 신뢰가 조정제도에 관한 신뢰를 상회한다는 결론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피해 구제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에 관한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특허청이 신뢰도 부분에서 중소기업의 58.5%가 특허청을 구제기관으로 신뢰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특허청은 5점 평균에서도 3.61점을 획득하여 구제기관으로써의 신뢰도가 세 기관 중에선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9 | 피해 구제기관 신뢰도⁸⁷⁾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구제기관으로써의 신뢰도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3.61점(5점 평균)		3.55(5점 평균)		3.55(5점 평균)	
신뢰할 수 있음	58.5%	신뢰할 수 있음	57.7%	신뢰할 수 있음	57.2%
보통	37.1%	보통	35.0%	보통	35.2%
신뢰할 수 없음	4.4%	신뢰할 수 없음	7.3%	신뢰할 수 없음	7.6%

경청, Gallup, 2021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참조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행정기관이 조정위원의 선임에 관여하고 분쟁해결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부분이 조정위원회의 독립성 제고에 있어 한계로 언급된다.⁸⁸⁾ 이에 더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법률은 조정위원의 직무수행에서의 독립성 보장과 신분보장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입법적 관련 내용 부재는 조

87) 경청, Gallup, 2021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41페이지.

88) 임동진, 대안적 갈등해결방식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2011), 441페이지.

정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규정의 불비로 인하여 조정위원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훼손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조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규정과 함께 조정이라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조정위원들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직무수행을 담보하는 입법 장치⁸⁹⁾이기에 당연히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2. 독립성·중립성 제고 방안

다음과 같은 의견⁹⁰⁾이 독립성·중립성 제고 방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 의견에 따르면, 우선 먼저 행정기관의 조정위 선임과 일방적인 위원장 임명은 되도록 지양되어야 한다고 한다.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이는 매우 조정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에 매우 긍정적인 방식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아닌 중립적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공무원인 조정위원을 최소화하면서, 민간위원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를 통해 조정위원회가 관련 행정기관과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신분이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사실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논리는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본 연구를 진행하며 독립성 확보 및 제고와 관련하여 제시된 의견은 ‘현재·미래의 이해 관계자 가능성이 높은 직종⁹¹⁾의 비율 축소를 통한 독립성 확보’이다. 물론 조정위원의 전문성 부분에 있어 법률전문가는 필요한 요소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할 ‘전문성 제고 방안’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그러나 현재·미래의 이해 관계자 가능성이 높은 직종이 법률 전문성 확보 및 제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하다. 현재·미래의 이해 관계자 가능성이 높은 직종의 대표적 직업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기반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직업이 아니다. 모두가 비난하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변호해야 할 대상자라면 그 범죄자에게 유리한 법리를 주장하는 직업인 것이다.

기술 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제척이나 기피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미래의 주요한 고객이 될지도 모르는 기업을 대상으로 어떠한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는 상당한 의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직종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반드시 훼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무엇이냐의 문제이기보단 어떻게 보

89) 김봉철, 전게서, 137-138페이지.

90) 김봉철, 상게서, 138-139페이지.

91) 변호사와 변리사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느냐가 문제인 사안이다. ‘장래에 더욱 많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줄지도 모르는 대기업의 편에 서서 또는 그 대기업과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독립성과 중립성을 고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분쟁의 당사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지워지지 않는 의심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먼저 살펴보면, 직능별 구분을 살펴보면 총 69명의 조정위원 가운데 변호사가 25명을 차지하고 정부 공무원 1명, 변리사 4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별로 살펴보면 법률(영업비밀 및 부정경쟁)에 관한 전문가가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0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직능별)

구분	정부	변리사	변호사	총계
직능별	1	43	25	69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참조

표 21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기술별)

구분	정부	상표 디자인	특허·실용신안				법률 (영업비밀, 부정경쟁)	직무 발명	총계
			기계 금속	화학 생명	전자 전자	정보 통신			
기술별	1	16	9	5	5	5	24	4	69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참조

이처럼 변호사의 비율은 34%를 차지하며 전체 조정위원의 1/3에 해당하고 있으며 변리사의 경우 이보다 높은 62%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변호사와 변리사의 비율이 다른 직능위원군에 비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2 |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구성(직능별)

구분	판사	변호사	변리사	법학 교수	기술 거래사	유관 단체	총계
직능위원	3	7	5	4	1	1	21

중소기업 기술보호올타리 홈페이지 참조

표 23 |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구성(기술별)

구분	기계 소재	전기 전자	정보 통신	화학	에너지 자원	바이오 의료	지식 서비스	기업 자문	회계 세무	총계
기술위원	5	5	5	3	3	2	1	4	1	29

중소기업 기술보호올타리 홈페이지 참조

직능별 구분에서 변호사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중재의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판사가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와는 다르게 법학교수 역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비율이 전체의 1/3로 상당히 높음은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라 변호사의 구성 비율을 상당 부분으로 축소하는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정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정위원의 독립성과 신분보장과 관련한 규정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민간조정위원회에 대한 별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신분보장은 권리 및 권한의 안정성을 담보해 주는 대신 별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조항 신설은 엄중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조정위원은 책임감을 높일 수 있으며 분쟁의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갖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독일 대체적 소비자분쟁해결법 소개

이러한 사항들이 법규정으로 완비되어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독일의 ‘대체적 소비자분쟁해결법(이하 독일소비자ADR법)⁹²⁾이다. 기본적으로 분쟁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연관성을 차단하고 편파적 태도로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해소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독일소비자ADR법은 다양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가 제공되길 바라면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 표 24 ▮ 독일소비자ADR법 조정한 독립성 관련 규정

독일소비자ADR법	내용
제3조	소비자분쟁조정기관의 재정적 독립성, 개별적으로 할당된 충분한 예산
제9조	분쟁조정인의 임명 및 해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비경제적 단체의 참여
제6조 제3항	선행경력으로 인한 임용금지(경업금지)
제8조 제1항	최소임기
제8조제2항	해고의 제한
제7조 제2항 제1문	사업자에 의한 보수금지
제7조제2항 제2문	결과로부터 보수의 독립성
제7조 제3항	기관에 대한 공개의무
제7조 제4항	조건부활동금지
제7조제1항	지시로부터의 자유

92) 독일소비자ADR법은 ‘민간소비자조정기관(Private Verbraucherschlichtungsstellen)’을 중심으로 한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 소비자분쟁과 관련된 절차를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가. 기관 독립성 확보

분쟁해결기관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분쟁조정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다. 그러므로 독일소비자ADR법 제3조는 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적 독립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기관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업 등으로부터 일체 어떠한 후원이나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 소비자 분쟁에 있어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고, 소비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이때 소비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재원은 개별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협회 형태의 비즈니스 커뮤니티 및 회원사로 구성된 조합이 부담하는 것이다.

나. 조정위원 자격의 제한

조정위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분쟁 당사자와 어떠한 관련도 없어야 한다. 이에 따라 독일소비자ADR법 제6조 제3항은 선행경력으로 인한 조정위원 자격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⁹³⁾ 이는 특정기업과 조정위원 간의 관계를 통한 중립성 훼손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정인은 분쟁조정인으로 임명되기 직전 3년 동안 분쟁 조정에 관한 (1) 소비자분쟁해결기관의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 또는 법 규정의 기초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위해 근무한 경우,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위해 근무한 경우, (3) 소비자조정기관 관할범위에 관하여 위의 (1)에 따른 사업자에 속하고 경제적인 범위에서 사업자의 이익을 함께 하는 단체를 위해 근무한 경우, (4) 소비자조정기관 관할범위에 관하여, 경제적인 범위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함께 하는 단체를 위해 근무한 경우에는 분쟁 조정인으로 임명될 수 없다. 그러나 해당 단체와 관련한 사건에서 분쟁 조정인이었다는 이유로 조정인으로서 임명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물론 업무 내용이나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문의 형식으로 업무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조정위원 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다. 조정 진행에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

조정인은 독일소비자ADR법과 이외 국내법이 정하는 절차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여기서의 의무는 법관에 대한 법률상의 보장과 의무와 동일하다. 또한 조정인에게 누군가가 지시

93) 독일소비자ADR법 제6조 분쟁조정인(Streitmittler)

(3) 임명되기 전 지난 3년 동안 분쟁 조정에 관한 다음의 일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1. 소비자분쟁해결기관의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 또는 법 규정의 기초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위해,
 2. 사업자 또는 제1호에 따른 사업자단체를 위해,
 3. 소비자조정기관 관할범위에 관하여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속하고 경제적인 범위에서 사업자의 이익을 함께 하는 단체를 위해,
 4. 소비자조정기관 관할범위에 관하여, 경제적인 범위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함께 하는 단체를 위해,
- 제1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단체에 관한 분쟁조정인으로서 행위는 조정인으로서 임명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를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된다. 지시를 하는 것 자체로 조정인 업무에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며 어떠한 사유로도 훼손된 독립성은 치유될 수 없다. 그리고 독일 민법 134조⁹⁴⁾에 의해 이러한 불법에 따라 무효가 된다.

기본적으로 조정인의 조정 진행에 있어 독립성이란 법관의 독립성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용하기에, 독일기본법 제97조⁹⁵⁾, 독일법관법 제25조⁹⁶⁾ 및 법원조직법 제1조⁹⁷⁾, 사법보좌관법 제9조⁹⁸⁾의 내용에 따라 조정인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그러므로 조정인은 법률 이외에 어떠한 지시나 구속 또는 간섭을 받지 않는다. 청문권⁹⁹⁾과 같은 기본권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조정업무에 대해서 지시나 구속 또는 간섭을 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독립성이란 조정인과 분쟁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반면에 중립성이란 절차 진행에서 조정인이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립성이란 절차 진행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모든 당사자들의 이익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독일소비자ADR법 제17조 제2항은 절차법적인 동등한 취급의 명령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조정인은 법관과 동리하게 구술변론의 종결 및 연장 또는 변론기회 등과 같은 외부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에 있어서 양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조정인은 당사자의 지식수준 및 표현 능력과 같은 부분에서 당사자 사이에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오고가는 협상 표현을 고려할 수 있다.

라. 신분보장(최소임기 보장과 해임제한)

독일소비자ADR법 제8조¹⁰⁰⁾는 조정인의 최소임기와 해임제한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는

-
- 94) 독일민법 제134조 법률상 금지
그 법률로부터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95) 독일연방기본법 제97조
(1) 법관은 독립적이며 오로지 법률에 구속된다.
- 96) 독일법관법 제25조 원칙
법관은 독립적이며 오직 법률에만 복종한다.
- 97) 법원조직법 제1조
사법권은 법에 따라 독립적인 법원에서 이를 행사한다.
- 98) 사법보좌관법 제9조 사법보좌관의 지시로부터의 자유
사법보좌관은 사실상 독립적이며 법과 질서에 의해서만 구속된다.
- 99) 행정절차의 참가자가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개인적 공권으로, 자신의 권리의 방어에 봉사하는 참가자가 갖는 이익이며 포기될 수 있는 권리이다.
- 100) 독일소비자ADR법 제8조 분쟁조정인의 재임 기간 및 해임
(1) 분쟁조정인은 적절한 기간 동안 임명되어야 한다. 직무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재임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인은 다음의 경우 해임할 수 있다.
1. 분쟁조정인의 활동이 독립적이고 비편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계속 진행될 것 같은 경우
2. 분쟁조정인으로서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3.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짧은 임기나 해고 등을 이유로 고용안정성이 훼손되어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므로 조정인은 '3년 이상'의 적절한 기간동안 임기가 보장된다. 다만 조정인이 3년 이내의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기간 역시 가능하다.

이와 함께 조정인의 해임은 독립성의 상실, 직무수행에 있어 영구적 장애 또는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한하여 가능하다. 여기서의 독립성 상실이란 의미는 지속적으로 독립적인 업무진행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한 일회적 비중립적 태도를 가지고 독립성 상실이라 할 수는 없다. 결국 동법 제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서야 조정인의 해임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시 상황이 아니더라도 동법 제6조 제3항¹⁰¹⁾에 위반되는 기업과의 긴밀한 관계 등의 상황은 조정인의 업무를 중립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한 사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 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라 하더라도 즉시 해임되는 것은 아니다. 경고, 지시, 추가교육 등의 징계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해임은 최후의 수단으로써 적용되는 것이다.

마. 절차의 투명성

독일소비자ADR법 제7조¹⁰²⁾에 따라 조정인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상황과 사유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사유와 상황에 대해서는 조정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일방 당사자에 의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양당사자나 일방 당사자는 조정인의 조정업무가 불리할 수 있다는 증거를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해당 조정인이 자신들의 사건에 조정인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조정인으로서의 개입이 가능하다.

101) 독일소비자ADR법 제6조 분쟁조정인

(3) 임명되기 전 지난 3년 동안 분쟁 조정에 관한 다음의 일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1. 소비자분쟁해결기관의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 또는 법 규정의 기초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위해,
 2. 사업자 또는 제1호에 따른 사업자단체를 위해,
 3. 소비자조정기관 관할범위에 관하여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속하고 경제적인 범위에서 사업자의 이익을 함께 하는 단체를 위해,
 4. 소비자조정기관 관할범위에 관하여, 경제적인 범위에서 소비자의 이익이익을 함께 하는 단체를 위해,
- 제1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단체에 관한 분쟁조정인으로서 행위는 조정인으로서 임명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102) 독일소비자ADR법 제7조 분쟁조정인의 독립성과 중립성

- (1) 분쟁조정인은 독립적이며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는다. 그는 중립적인 분쟁해결을 보장해야 한다.
- (2) 분쟁조정인은 당해 사업자나 당해 사업자와 관련된 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보수를 지급받아서 안 된다. 분쟁조정인의 보수지급은 분쟁해결 절차의 결과에 좌우되지 않는다.
- (3) 분쟁조정인은 자신의 독립성 또는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소비자 조정 기관의 지원기관에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
- (4) 분쟁조정인은 그의 독립성 또는 중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분쟁조정인은 당사자들이 자신의 분쟁 조정인으로서의 활동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5) 분쟁조정인의 업무가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상인의 이익이 속한 단체에 이전된 경우, 양측은 동등한 수로 대표되어야 한다. 동법 제6조 제3항은 거래자의 이익이나 소비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신체 회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II 전문성 제고 방안

1. 기술전문성 제고 방안

기술이 분쟁의 대상인 ADR의 경우 일반적인 행정형 ADR과 달리 법률적 쟁점에 관한 중요도보다는 기술적 이해도에 관한 중요도가 더욱 높다. 보통 조정의 경우라도 일방 당사자가 제시하는 기술 관련 자료는 2,000페이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3개월 이상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비상설로 운영되는 조정위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숙고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조정이라는 것이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되고 결론에 이른다는 장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조정위원들이 충분히 쟁점이 되는 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조정위원 구성을 통해 기술적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변리사가 43명으로 전체 인원 69명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비율적으로는 상당히 높아 보이나 해당 변리사가 지식재산권 전문가일 수도, 기술 전문가일 수도 있는 인적 구성이라 직능별 정보를 가지고는 판단이 어렵다. 그러나 기술별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기술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상표디자인 전문가가 16명으로 기술과 관련된 전문가는 기계금속 9명, 화학생명 5명, 전지전자 5명, 정보통신 5명으로 총 24명이 전부이다. 전체 인원도 부족하지만 기술별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구성도 역시 전문성 확보에는 매우 열악한 구성이다 기술 관련 위원은 총 23명으로 기계소재 5명, 전기전자 5명, 정보통신 5명, 화학 3명, 에너지자원 3명, 바이오 의료 2명이 전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성 제고 방안으로 우선 기술 관련 공공연구원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원과 협력하는 방안이 있다. 국가 과학기술 연구회는 시대 대전환과 이에 따른 국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즈음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 연구를 통해 국가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 연구사업 정책 지원 및 지식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총 25개의 연구기관이 소속되어 있어 다양한 기술의 범위를 망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에 관한 전문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들은 공공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로 사기업이나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기술 전문가에 비해 객관성 부분에 있어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표 25 | 국가과학기술 연구회

순번	기관	순번	기관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4	녹색기술센터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5	세계김치연구소
3	한국천문연구원	16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7	한국기계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1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	한국전기연구원
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1	한국화학연구원
9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2	안전성평가연구소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3	한국원자력연구원
1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4	한국재료연구원
1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5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13	한국식품연구원		-

그러므로 이러한 기관들과 MOU 등의 방식을 활용한 관계 수립을 통해 기술전문성 제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복수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쟁 대상의 기술에 대한 다수의 의견 수렴 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 전문가와 조정위원들 간의 사전 논의 및 검토를 위한 상당 기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학기술 관련 공공연구원을 통한 전문성 제고 방안과 함께 국내 기술 관련 협회와의 협업을 통한 전문성 제고 방안 역시 제시될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 한국 IT서비스 산업협회, 한국첨단자동차기술협회 등 다양한 기술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회들이 국내에 다수 존재한다. 위에서 언급한 공공연구원과 마찬가지로 기술협회들과의 관계 수립을 통해 기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별 방안들을 종합하여 기술침해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또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2. 조정전문성 제고 방안

기술의 전문성과 함께 조정위원의 조정전문성은 조정위원회의 핵심요소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정이란 자기책임원칙하에 당사자들이 직접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과정이고 이에 따라 조정위원은 안내자의 역할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분쟁 당사자끼리 해결을 찾을

수 있는 경우라면 조정이란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분쟁의 해결점이 당사자들 선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조정이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조정위원은 더욱 무겁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목동이 양떼를 몰고 가듯 분쟁의 해결점으로 당사자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조정위원의 역할일 것이다.

조정 성립 사건의 경우 성립이 되기까지 조정위원의 역할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분석한 결과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합리적인 조정안 제시가 33.5%였고, 조정위원들의 적극적인 설득노력이 25.3%였다. 또 노사 간의 대화분위기 조성 노력도 19.6%, 새로운 협상안 돌파 구 마련과 대화의 장 마련이 10.8%인 것으로 나타났다.¹⁰³⁾ 여기에서의 ‘적극적인 설득 노력’은 조정전문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 표 26 ▮ 조정 성립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

구분	사례수(개)	비율(%)
노사 당사자 간의 대화 분위기 조성	31	19.6
노사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안 제시	53	33.5
조정위원들의 적극적인 설득 노력	40	25.3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이나 미국에 비하여 조정위원의 적극 개입은 상당히 높은 편¹⁰⁴⁾이며 조정안 제시도 조정위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조정의 성립 여부는 조정위원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조정위원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의 수행자가 되어야만 한다. 당사자의 보조자 역할에 그치지 말아야 하며, 당사자들 사이에서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협상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이끌어내야 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이것이 조정전문성에 기반을 둔 역할인 것이다. 이러한 조정위원은 조정전문성을 갖추고 분쟁의 해결, 즉 조정 성립의 확률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조정위원들의 조정전문성은 어떠한가? 직능별 구성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기술전문성 또는 법률전문성을 갖춘 조정위원 직종은 보이나 조정전문성을 갖춘 조정위원을 찾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나마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에는 판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찾기가 힘들다.¹⁰⁵⁾ 기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이 공무원 출신이나 관련분야전문가, 저명인사로 구성되어 조정전문가는 부족한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한다.¹⁰⁶⁾ 이에 따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행정형 ADR에 대한 전문가 FGI(Focus Group

103) 이성희, 효과적인 조정방법에 대한 실증연구,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 심판, 제25호 3~32(2006), 13페이지.

104) 함영주, 미국의 민간형 ADR의 운영에 대한 실태 조사: JAMS방문 인터뷰, 한국조정학회 분쟁해결 제2호(2016), 250페이지.

105) 물론 조정뿐만 아니라 중재의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판사가 포함된다.

106) 임동진, 전게서, 384페이지.

Interview) 분석 결과에서도 조정위원회에 대한 전문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¹⁰⁷⁾ 실질적으로 분쟁 당사자들은 조정위원의 조정에 관한 적극성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판사 출신 조정위원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조정위원의 조정전문성을 제고하는 데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오랜 기간 동안 업무를 통해서 조정능력이 뛰어난 판사 또는 판사 출신 변호사(또는 법학교수)를 조정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가. 국내 조정전문가 교육

이와 함께 경험을 통해 조정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을 조정위원으로 임명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조정 전문성 제고 방안이 될 수 있으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조정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문교육과정의 실시가 필요하다. 일부 행정형 ADR 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위원의 조정전문성 제고를 위한 과정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이 보편적인 모습이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보다 더욱 열악하다. 우선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이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근래에 일시적으로 실시되었던 것은 2018년 11월의 ‘지식재산 분야 분쟁 조정제도 교육 워크숍’이다.

국내외 중재기관 등에서 조정제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지식재산 분야의 특수성이 반영된 교육은 아니고 일시적 교육일뿐 이었다. 지식재산 관련 법률 내용, 분쟁 조정 사례, 조사서 작성 방법 등의 이론교육뿐 아니라, 교육생이 당사자로 조정에 참여하는 실습 과정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① 지식재산 일반 및 분쟁 유형의 특수성과 유의점을 교육하는 기초 과정, ② 조정사례(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저작권분쟁조정제도)를 공유하는 과정, ③ 조정안·조정조서 작성 방법 및 유의점을 교육하는 심화 과정, ④ 조정기법, 협상 및 모의조정을 포함한 실습 과정이었다.

▮ 표 27 ▮ 지식재산 분야 분쟁 조정제도 교육 워크숍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주요 내용
11월 15일	기초 과정	10:00~12:00	• 지식재산 관련 일반 교육
		13:00~15:00	• 지식재산 분쟁 유형의 특수성 이해 및 유의점
	사례 과정	15:00~16:00	• 제도별 조정 사례 공유(산업재산권)
		16:00~17:00	• 제도별 조정 사례 공유(저작권)
11월 16일	심화 과정	10:00~12:00	•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조정안·조정조서 작성 방법 및 유의점
	실습 과정	13:00~17:00	• 조정·협상 방안 교육 및 모의조정

107) 임동진, 상계서, 449페이지.

그러나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른 교육들과 마찬가지로 교육 내용과 교육 이수 시간은 조정위원의 조정전문성을 제고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6시간으로 구성된 조정 관련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조정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한 국내 교육 프로그램 몇 가지를 공유해 보겠다. 먼저 살펴볼 기관은 대한상사중재원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업무를 기본으로 하는 기관답게 이미 조정전문가 교육이 15차에 이른다. 2022년 7월에 온라인으로 실시한 조정전문가 기본 과정이 15차로 진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었다. 교육기간은 총 9일이었으나 교육은 총 6개 과목의 온라인 동영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정에 관한 실습은 1시간 30분만이 진행되었다.

▣ 표 28 ▣ 대한상사중재원 제15기 조정전문가 기본 과정

차시	주요 내용
1~2차시	• ADR제도 개관
3~5차시	• 조정절차와 조정인의 역할
6~7차시	• 합의도출을 위한 이해관계 기반의 협상기법 활용
8~11차시	• 조정조서 작성 실무와 관련법적 문제
12~13차시	• 설득전략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14~15차시	• 조정의 심리학
16차시	• 실시간 온라인 조정 시뮬레이션

다음은 (사)한국조정중재협회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한다. 해당 협회는 노사분쟁해결에 전념하면서 협상 및 조정 전문가 양성을 위해 결성된 조직인 만큼, 2008년부터 협상 및 조정 전문가 양성 과정을 실시하였다. 31명의 조정전문위원을 보유하고 있음과 심화 과정을 이수한 자 중에서 실무 경험을 일정 기간 쌓은 후 협회의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전문가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협상 및 조정 전문가 양성 과정은 기본 과정, 전문 과정, 심화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과정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 표 29 ▣ 과정별 개요

과 정	과정 설명
기본 과정	협상 및 조정에 관련되어 대학교 학부에서 배우는 수준의 기초이론과 기법들을 습득하고, 전문가 양성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간접경험을 쌓을 수 있다.
전문 과정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협상 및 조정 분야를 전공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사례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주로 하며, 복잡한 상황과 다자간 협상 및 조정까지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심화 과정	세미나와 토론, 사례 분석, 주제 발표 등을 통하여 이론과 기법들을 현장에 접목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고난도의 전문가 양성 시뮬레이션으로 연습을 하며 현장 실습과 인턴 과정도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표 30 | 과정별 내용

구 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방법
기본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의 개념 • 협상의 유형 • 협상의 전략 • 협상의 기법 • 협상의 절차 • 협상난국 타개 • 협상의 기본스킬 • 협상의 사례와 실습 	30시간	강의, 사례 분석, video 시청, 토론, 질의응답, 시뮬레이션 실습
전문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의 개념 • 조정의 장점 • 조정의 유형 • 조정의 기법 • 조정의 절차 • 조정난국 타개 • 조정의 기본 스킬 • 조정의 사례와 실습 	30시간	강의, 사례 분석, video 시청, 토론, 질의응답, 시뮬레이션 실습
심화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재의 개념 • 중재의 제도와 실태 • 조정중재의 현장 견학 • 조정중재의 현장 사례 • 조정중재의 현장 실습 • 성공적 조정중재 워크숍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커리큘럼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교육 정보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기본/전문/심화 과정 구분을 통해 교육의 난이도를 구분하고, 또한 협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정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한다는 점은 조정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국내 조정전문가 교육은 노동위원회 조정전문가 과정이다. 2022년도 처음 시작한 과정으로 우선 3개월(12주)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간 교육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역시 교육 프로그램에 관하여 공개하고 있지 않아, 교육 이수자의 정보 공유 글을 참고하여 간략하게나마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 | 조정전문가 과정¹⁰⁸⁾

구 분	주요 내용
국가별 노사관계의 특성과 노사갈등 유형 및 분쟁시스템	미국, 영국 등 외국의 분쟁해결 기관과 갈등 해결 방식을 알아보고, 향후 우리나라 조정 시스템에서 보완할 부분을 공유한다.
전략적 조정 기법과 사적 조정의 활용 가능성 모색	노사 협상 상황 유형을 분석하고 상황에 부합하는 조정기법을 교육한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분쟁해결 시스템 분석	국내외 노사관계 시스템 전반을 알아보고, 민간 및 공공 부분의 교섭 양상을 분석 후 향후 노사관계의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노동위원회 조정 성공 및 실패 사례	국내 노사관계의 특성과 노동위원회의 조정과정을 습득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례와 최종 결렬로 노사가 각각 타격을 입은 사례 등에 관한 학습을 통해 조정전문가의 역할과 주의점을 교육한다.
모의 조정위원회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시정 신청 사건,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양 당사자와 조정위원 역할을 맡아 가상의 조정회의를 진행하여 조정 성립 및 불성립 요인과 조정 양상을 분석한다.

다른 교육 프로그램과 다른 구성임을 알 수 있다. 이론 위주의 주입식 일방형 교육이기보다는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위주의 교육 방식으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강의식 방식에서 벗어나 주제에 따라 효율적인 전달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정에 관한 지식과 함께 조정전문가로서의 역할 중요성까지 자각하게 해 주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나. 국외 조정전문가 교육(독일을 중심으로)

미국의 경우 연방법무부 분쟁해결국과 정부부처합동 ADR 실무그룹 및 주정부 외에도 민간부문 조정협회들과 주법원들이 관련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 중에서 주법원에 의한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주마다 상이하긴 하나 기본적으로 ADR 의사소통기법, 문제해결기법, 협의안 작성 방법, 조정실습 등 실무적인 방향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¹⁰⁹⁾

독일의 경우 조정법 제5조 제1항에서 조정인은 적합한 교육과 정기적인 연수를 통해 이론지식과 함께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무엇보다 실무적인 협상기법과 의사소통기술, 분쟁해결능력, 사례 연습과 역할극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한다. 아울러 ‘조정인의 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시행령(Verordnung über die Aus- und Fortbildung von zertifizierten Mediatoren)’ 별지에는 다음의 교육 내용을 120시간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래의 기본 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격 있는 조정인으로 표시되며, 자

108) 김현근 노무사의 노동법 이야기, <https://blog.naver.com/laborlaw26/222888471176>(호가인, 2022.10.06.).

109) 황승태·계인국, 한국형 대체적 분쟁해결(ADR)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6), 429-430페이지.

격이 있는 조정인이라도 2년에 1회씩 기본 교육을 심화한 교육을 최소 20시간 이수해야 하고, 최소 2년에 4회 이상의 조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표 32 | 조정인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 교육¹¹⁰⁾

구분	교육 내용	교육 시간
1	조정 제도의 개관과 조정의 기초 1. 조정의 기초 가. 조정 원칙, 절차, 단계의 이해 나. 조정 절차의 커뮤니케이션과 업무의 이해 2. 소송 및 다른 ADR 절차와 조정의 구별 3. 조정을 할 수 있는 분야의 이해	18
2	조정 절차의 과정과 구조 1. 조정 절차의 세부 단계 가. 조정 절차 이용 합의 나. 조정 절차에 필요한 자료 다. 당사자 이익의 파악 라. 여러 합의안의 수렴과 평가 마. 최종 합의안 2. 다양한 조정 방식 가. 분리 조정 방식 나. 협력/팀별 조정, 다수 당사자 조정, 셔틀(shuttle) 조정 다. 제3자의 참가 3. 기타 가. 조정의 사전 준비와 사후 평가 나. 조정 과정의 기록과 보관	30
3	협상 기법과 능력 1. 협상 과정의 분석 2. 협상과 협상의 관리 직관적 협상, 하버드 콘셉(Harvard-Konzept)에 따른 협상/통합 협상 기법, 분할 협상 기법	12
4	면담, 커뮤니케이션 기법 1. 커뮤니케이션의 기초 2. 커뮤니케이션 기법(예: 적극적 청취, 환연(재진술), 질문법, 동사화(Verbalisieren), 재구성, 언어-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3. 해결책의 개발과 평가 기법(예: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매핑, 다른 창의적 기술, 위험 분석) 4. 시각화 기술과 절제 기법 5. 위기 상황 대처법(예: 방해, 거부, 심화, 지위의 불균형)	18
5	갈등(해소) 능력 1. 갈등 이론(갈등 요소, 갈등 구조 및 갈등 분석, 심화 단계, 갈등 유형) 2. 갈등 구조의 이해 3. 개입 기법	12
6	조정에 관한 법 1. 법적 영역: 조정인 계약, 직무상 권리, 비밀 유지, 보수, 책임과 보험 2. 직무 관련법의 편입 3. 법률구조법의 이해	6

110) 황승태·계인국, 상계서, 171~172페이지.

구 분	교육 내용	교육 시간
7	조정 절차와 법 1. 조정 절차에서 법의 역할 2. 조정인에 의한 조정 절차에서 허용되는 정보와 허용되지 않는 법률 상담의 구별 3. 변호사의 임무와 조정인 역할의 구별 4. 법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조정 당사자에게 외부의 법률 상담을 추천해야 하는지 여부의 판단 5. 외부 상담인과의 협력 6. 합의에서 조정인 협력의 법적 특수성 7.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합의의 법적 의미와 실현 가능성	12
8	개인적 능력·책임과 역할의 이해 1. 역할의 정의, 역할 갈등 2. 조정인의 임무와 자기 이해(특히 존중, 존경 및 마음가짐) 3. 양측의 대변, 중립성, 조정 신청인과 분쟁으로부터 전문적인 거리 유지 4. 조정 절차에서의 영향력과 공정함 5. 감정 다스리기 6. 자기반성(예: 직업적 신념 및 사회화와 관련된 자기 한계의 인식)	12
합계		120

다. 산업재산권 및 기술 관련 조정전문가 교육 수립 필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조정위원의 조정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수립·실시되어야 한다. 우선 무엇보다도 교육의 기간이 길어야 한다. 하루 또는 이틀에 걸쳐 실시되는 교육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이론보다는 실무와 실습 위주의 교육 내용이 효율적일 것이며, 이론 교육이라 하더라도 조정의 개념 등보다는 설득을 위한 대화 전략, 조정에 도움이 되는 심리학과 관련된 내용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참여수업 방식이나 역할·상황극을 통한 시뮬레이션 학습이 조정위원의 상황대처 능력을 함양하는 데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9월에 실시되었던 ‘노동위원회 조정전문가 과정’을 모범사례로 하여 산업재산권 및 기술 관련 조정전문가 교육을 수립할 것을 제언한다.

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장기적 관리는 (사)한국조정중재협회의 관련 전문가 인증서 발급 방안이 관련 교육의 홍보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협회는 조정전문가를 양성하는 3단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교육과정 이수와 시험 통과 여부를 통해 1~3급까지의 협상전문가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다.

표 33 | 과정별 개요

자격증	요건
1급 협상전문가	기본 과정, 전문 과정, 심화 과정 수료 후 1급 시험 합격자
2급 협상전문가	기본 과정, 전문 과정 수료 후 2급 시험 합격자
3급 협상전문가	기본 과정 수료 후 3급 시험 합격자

일본의 경우엔 정부 주도의 조정인 양성교재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조정 기법을 기반으로 일본 법원 조정에서 얻게 된 경험 사례들을 추가하여 ‘조정인 양성교재’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¹¹¹⁾ 이는 변호사회, 사법서사회, 행정서사회 등 전문 법조인들에게도 기본이 되는 조정 관련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교재 편찬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에게도 있다. 일본의 경우 교재 편찬에 2년(2004~2006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우선 개념과 이론에 관한 교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성공 및 실패 사례와 이로 인한 후속 결과에 대한 사례집 형식의 교재 편찬 및 배포는 조정위원의 조정전문성 교육의 효율성을 크게 높여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이나 미국에 비하여 조정위원의 적극 개입은 상당히 높은 편¹¹²⁾이며 조정안 제시도 조정위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조정의 성립 여부는 조정위원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여러 역량이 요구된다. 그중 조정전문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운영 주체에 대한 방안이다. 물론 각각의 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관이 각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 과정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산업재산권이나 중소기업기술 관련 조정위원들은 상근 조직이 아니며, 분쟁의 대상인 산업재산권과 기술은 서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통합하여 실시하여도 조정전문성에 관한 교육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로 정부 부처가 다르지만, 다행히도 특허청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란 훌륭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산업재산권 및 기술 관련 조정위원 조정전문성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111) 김상찬, 일본의 조정인 양성현황과 시사점,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59권(2012.9.), 188페이지.

112) 함영주, 전게서, 250페이지.

제3절

조정과 소송의 관계

I 시효중단효

조정을 개시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가 조정절차를 멈추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민사조정법 제35조 제1항은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조정이 아닌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이 해당 조정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조정신청이 각하 또는 취하되거나 중지된 경우 또는 불성립으로 종료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¹¹³⁾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러한 경우 시효완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분쟁 당사자는 조정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행히도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제25조 제7항¹¹⁴⁾에 ‘민사조정법’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는 경우 피해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시효중단에 관한 효력을 관련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조정신청만으로 시효중단효를 인정하면 단순히 시효중단을 위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남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이유로 이에 대한 방지를 위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¹¹⁵⁾ 이러한 필요에 의해 발명진흥법 제47조 제2항에서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개선 의견이 아래와 같이 존재한다.

113) 고희석·서상문, 조정제도와 소멸시효의 중단,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25권 제3호(2013.2.), 78페이지. 김봉철, 전게서, 각주 342 재인용.

이와 같은 견해로는 정선주, ADR 통일절차법의 제정에 대한 연구, 한국사법행정학회 민사소송: 한국 민사소송법학회지 제11권 제1호(2006.5.), 304. 이와는 달리 조정의 신청은 청구(「민법」 제168조 제1호)가 아니면 적어도 최고의 일종으로서 권리 행사를 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민법」 제174조), 조정신청으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김연,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 특별 조정절차의 검토,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민사소송 제14권 제1호(2010), 64]. 그러나 대법원은 그 판결(2015.3.12. 선고 2014재다1513)에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분쟁조정신청은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 등’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조정신청의 시효중단효를 법률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14)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5조(분쟁의 조정 등) ⑦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한 분쟁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115) 김민중, 우리나라의 ADR제도의 발전기반구축을 위한 실천과제,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제30권 제1호(2010년 봄), 30 페이지.

[시효중단에 관한 개선 의견]¹¹⁶⁾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조정신청자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조정 상대방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조정을 거부하면, 실무상 대부분 조정불성립이 내려지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조정절차와 달리 소송절차는 그 투입되는 시간, 비용, 노력 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소제기를 단 기간인 1개월 내 결정하기 어렵다는 현실 역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멸시효제도 취지가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로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절차를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정절차를 신청한 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자임을 고려한 입법적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한 고민을 위해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의 시효중단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도급법에는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있어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시효중단 규정과 달리 조정이 불성립되더라도 당초의 시효중단의 효력에는 변함이 없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롭게 시효가 진행되도록 하는 규정을 둬으로써, 권리자 보호와 법적 안정성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사조정법상의 시효중단 규정과 마찬가지로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 소제기를 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이어지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두고 있는바, 조정절차의 여러 상황(조정불성립, 각하 등)을 예상하고 있는 가장 구체적인 시효중단 규정으로 보인다.

[참고규정]

하도급법 제24조의4(분쟁조정 신청 등)

- ④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제24조의5 제3항에 따라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2.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 ⑥ 제4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기술침해에 따른 조정절차 시효중단 규정을 모두 살펴본 결과,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법적 안정성 및 조정 절차의 여러 현실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① 조정신청 각하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 중단의 효력을 부정하고, ② 조정불성립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되, 조정절차 종료 시부터 새롭게 시효 진행을 다시 인정하는 하도급법상의 구체적 시효중단 규정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116) 본 내용은 재단법인 경청 박희경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이다.

II 조정과 소송절차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 중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조정절차를 중지하는 규정¹¹⁷⁾을 두고 있다. 다른 분야에 관한 조정 관련법은 당사자가 소송 중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조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¹¹⁸⁾ 그러나 상당수의 관련법들은 조정절차와 소송절차와의 관계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역시 그러하다. 조정과 소송절차에 관한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다.

[조정과 소송절차에 관한 의견]¹¹⁹⁾

첫째, 소송 진행과는 관계없이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독자적으로 진행하여 조정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소송결과에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진행하여 피신청인의 범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의 근거는 소송이 진행된다고 해서 법률상 조정 진행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으며, 위원회도 위원회 고유의 사실관계 조사, 법률검토를 통하여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의 조정은 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제도개선을 명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위원회는 법원의 소송상 판단이 있기까지 조정절차를 중단한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일 사안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분쟁 조정을 진행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신청인, 피신청인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불리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무익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 경우 신청인이나 신청인의 법률대리인이 조정에 계속 참여하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정결과를 유도하여 이를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함이며¹²⁰⁾, 통상 대기업인 피신청인이 계속 조정에 참여하는 이유는 신청인과 같은 이유 외에도 대기업으로서 분쟁조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여론상의 부담 때문이다.

셋째, 소송이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조정을 거부하여야 한다(법 제48조)는 입장이다. 즉 소송과 분쟁조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의견들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조정절차와 소송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조정위원회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 조정과 소송이 병렬적으로 진행되면서, 조정과 법원판결이 상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함을 통해 당사자는 소

117) 발명진흥법 제46조의2 제1항 제2호.

118)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4호.

119) 이성엽, 행정형 ADR로서 개인정보분쟁조정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 연구 제36권(2013.7.), 131~132페이지.

120) 소송제기 없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신청인 내지 신청인의 법률대리인은 피신청인이 조정안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전문기관에서 유리한 조정안을 유도하여 이를 증거로 하여 차후 소송에서 이용하기도 한다.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위원회의 사실조사 등을 포함한 심사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송과 조정 진행에 따른 이중 부담을 줄여져야 할 것이다.

또한 조정은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이기에 소송제도가 조정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소송은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소송이 강제적이고 종국적인 분쟁해결방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조정위원회가 객관적 사실 또는 당사자의 확정적 의사를 확인하여 조정 절차를 중지하거나, 조정절차를 속행하는 입법이 타당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분쟁의 대상이 기술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분쟁의 대상이 기술인 경우 신속한 분쟁해결이라는 부분은 조정제도의 커다란 장점들 중 하나이다. 이러한 장점을 당사자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소송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조정의 개시나 진행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조정절차의 중지보다는 속행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조정제도의 활성화와 법원의 사건부담 경감을 위해서 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수소법원이 조정이 있을 때까지는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내용의 규정과, 소송절차의 중지가 없더라도 해당 조정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하지 않고 진행(또는 속행)하는 내용의 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분쟁을 언제든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적은 비용을 투입하여 해결한다면 분쟁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것이다.

또한 ADR은 소송과는 별개로 독자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 소송을 사용할 것인지 또는 ADR을 사용할 것인지는 사건의 당사자가 선택하거나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ADR의 결과를 소송을 통해 확인받거나 재심사 받을 필요가 없기¹²¹⁾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소송의 개시를 이유로 조정이 중단될 이유는 더욱이 없다고 판단된다.

121)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2018), 27페이지.

제4절

기타 제언

I 조정위원회 통합에 관한 의견

행정형 ADR을 운용하고 있다 보니 현재 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관의 수는 매우 많다. 그렇다 보니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각종 행정형 ADR 기관들을 규율하는 법령들의 소관 행정기관이 다르고, 행정기관들이 서로의 의견 교류나 사전검토 없이 조직·실적·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별 상황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¹²²⁾ 이러한 이유로 설치되었다가 폐지된 조정위원회도 상당수에 이른다.¹²³⁾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라는 지적¹²⁴⁾이 있다. 지적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크게 보면 지식재산권 관련 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¹²⁵⁾ 그러나 관련 법률이 다르고 소속 기관 또는 관련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각기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34 | 지식재산권 관련 ADR 기관 현황

조정위원회	소속 기관	분쟁 대상	조정 효력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특허청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재판상 화해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기술	재판상 화해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특허청	배치설계권, 전용/통상이용권	재판상 화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주소 등록과 사용	당사자간 조정서와 동일한 효력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거래 관련 피해구제	당사자간 합의와 동일한 효력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재판상 화해

122) 김봉철, 전거서, 161페이지.

123) 행정안전부, 2018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2018), 20~22페이지. 예를 들어 시·도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기업애로조정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분쟁위원회 등은 2015년에 폐지되었다.

124) 김상찬, 우리나라 행정형 ADR제도의 활성화 방안,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46집(2012.5.) 221페이지.

125)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지식재산권 관련 위원회라 판단된다.

이런 모습처럼 분쟁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분쟁 당사자는 관련 조정위원회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조정위원회를 선택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¹²⁶⁾ 그리고 일부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중복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각하할 수 있기도 하다.¹²⁷⁾

그러나 분쟁당사자가 중복조정신청에 관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조정위원회는 중복조정신청에 관한 사실을 알기 어렵다. 만약 당사자가 중복조정신청에 관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수의 조정위원회로부터 각기 다른 조정결과를 받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대한 신뢰감은 하락할 것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식재산권 관련 ADR 기관의 통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반드시 행정기관 산하에 설치할 필요가 없는 조정위원회가 있을 수 있다. 탄력적으로 분쟁해결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독립성 있는 전문 분야의 민간단체에 조정업무를 위탁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려를 통해 이번 246개 정부위원회 통합·폐지가 발표¹²⁸⁾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 산하의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가 폐지의 형식을 빌려 민간단체로 이전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¹²⁹⁾

II 상설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견¹³⁰⁾

조정위원은 자신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각각의 조정 절차를 담당하는 조정위원회는 각 사건마다 조정위원이 위촉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바, 기술 침해 사건과 같이 사건의 난이도가 높고, 전문성을 요하는 조정사건의 경우에는 조정위원들이 사건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개별 사건마다 위촉되는 조정위원들은 외

126) 김연,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 특별 조정절차의 검토,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민사소송 제14권 제1호(2010), 75페이지.

127) 환경분쟁조정법 제17조 제3항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은 결정으로 각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28) 2022년 9월 7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 246개에 관한 폐지 및 통합의 내용을 담은 정비방안을 확정하였고, 9월 중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129) 위원회 정비 사유는 타위원회와의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단순자문성격, 설치목적달성 및 필요성 감소, 장기간 미구성, 민간위원 참여조저를 들고 있다.

130) 본 내용은 재단법인 경청 박희경 변호사가 작성한 원고를 기반으로 하였다.

부에서 변호사, 변리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정절차에 불규칙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사전조사나 면담 등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고난이도 기술침해 조정사건에 있어, 단기간에 선임된 외부위원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집중도를 보일 수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하락시켜 분쟁 당사자로 하여금 ADR제도 이용을 주저하게 한다. 실제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법조 비상임조정위원으로 활동한 분의 경우 자신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상근조정위원 필요에 관한 의견]¹³¹⁾

환경분쟁 신청사건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재정의 경우 실질적으로 재판과 같은 기능을 가지지만, 이러한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위원회에서 상근하며 이와 같은 재판적 기능에 대하여 법률전문지식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통할하고 지도·감독하는 자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이러한 기능을 간헐적으로 외부의 비상임위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시간적 및 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중략

위원장 1인만의 1인 상임위원 체제로 실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난점이 있다. 즉 **비상임위원의 경우, 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은 있으나 외부에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분쟁 조정업무에 대하여 전적으로 종사하지 못하며, 자신에게 배정된 개개의 분쟁사건 처리에 관여하는 정도이다.**

특히, 조정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들은 양 당사자 간의 의견 조율에 관여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그에 따라 조정불성립 선언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그러므로 ① 조정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분쟁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② 소속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하고, ③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변경 및 상설 조정위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도입과 관련하여 민사조정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민사조정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상임(常任)으로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위원(이하 '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상임 조정위원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민사조정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조정위원회(조정장 1명과 2명의 조정위원)의 조정장이 되기도 한다. 특히, 상임조정위원은 변호사

131) 강정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조정절차의 개선방안,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28권 제1호(2006), 91페이지.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법원 규칙(조정위원 규칙¹³²)에 따른 일정한 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법원 행정처장이 위촉한다.

위와 같이 민사조정법상의 상임조정위원 제도를 준용하여, 기술침해 사안에 대한 상임 조정위원제도를 두거나, 각각의 조정절차를 통합할 수 있는 상설조정제도를 도입하여 기술침해 사건에 대한 책임감 있는 조정능력을 보유하는 조정위원을 조직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결국 조정의 질은 조정위원의 조정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인데, 각 사건마다 단기간 내에 위촉되는 조정위원 제도만으로는 성공적인 조정절차를 이끌어 내기는 다소 힘들어 보인다. 상설 또는 상임조정제도는 조정제도의 활성화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상설조정위원의 양성을 통해 조정기법 등 다양한 분쟁해결기법을 통한 조정 교육을 실시하고, 소속감을 가지고 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려는 책임감 있는 상임 조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¹³³⁾

III 기술침해평가위원회 신설에 관한 의견¹³⁴⁾

조정위원의 기술 전문성 제고 방안과 관련하여 앞서 설명한 바가 있다. 이에 더하여 기술 전문성 제고뿐만 아니라 조정위원의 조정업무 경감을 위한 방편으로 '기술침해 평가위원회 도입'에 관한 제언을 제시한다.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기술 침해 관련 분쟁에서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없이 조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법원의 소송절차 역시 마찬가지이다. 법원은 세분화된 전문분야 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수 및 교육 등을 통하여 법관의 전문성을 다양화 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지만, 각 전문분야의 방대한 지식을 단기간에 습득하기란 사실상 어려울 뿐

132) 조정위원규칙 제2조의2(상임 조정위원의 위촉)

- ① 법원행정처장은 고등법원, 지방 법원 및 지방법원의 지원 소속 상임 조정위원을 위촉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상임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통산하여 10년 이상 다음 각 목의 직에 있던 사람
 - 가. 판사·검사·변호사
 - 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다.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민사조정위원 또는 가사조정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133) 상근조직의 도입으로 인해 오히려 ADR의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기존에 비해 길어질 수는 있으나 소송의 경우와 같이 길어질 염려는 없다. 또한 ADR에 대한 낮은 활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인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상근조직이 도입 또는 확대되어야 한다.

134) 본 내용은 재단법인 경청 박희경 변호사가 작성한 원고를 기반으로 하였다.

아니라 선불리 습득한 전문지식은 오히려 사실관계 판단에 대한 선입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기술적 용어인, 벌크핀펫(Bulk-FinFET), 잉곳(Ingot), 웨이퍼(Wafer), 메탈리제이션(Metalization) 공정, 솔라스 OLED 등의 기술적 용어조차 낯선 조정위원들에게 고도로 세분화된 기술 침해 사건을 오롯이 담당하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의 여부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방대한 조정기록과 함께 쏟아지는 기술적 전문용어, 기술 세부 구성 요소 및 동작 사항, 원리 등에 대한 다각적 시각과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감정(민사소송법 제33조) 또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민사소송법 제164조의2)를 통해 전문영역의 전문가에게 특정 분쟁상황을 분석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소송법 및 실체법 제반 원칙에 따라 심리하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상 1인의 전문가에만 의존하는 사실관계 분석은 자의적 판단의 오류 가능성을 항시 내포한다는 점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전문적인 기술침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조정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친 후, 사실관계를 종합·분석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기술침해 평가위원회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존재하는 감정 또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개선하여, 변호사, 변리사, 법학교수, 전문분야 교수, 관련 업계 실무자 등 다수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위원회의 토론 및 의결 등을 통해 기술침해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기술의 가치, 손해 배상 액수를 감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결국 기술침해평가위원회는 조정 절차 내의 조정위원의 조정업무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운용될 것인데, 조정위원은 기술침해 평가위원회가 분석한 기술침해 사실관계 및 손해 감정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조정 당사자에게 향후 소송 진행의 양상을 어느 정도 예측하게 하고, 이를 기초로 양 당사자의 대립되는 의견을 적절히 조율하는 등 조정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도 다양한 기술 분야의 기술전문가 또는 실무가로 이루어진 다수의 협회 또는 전문기관이 존재한다. 한국산업융합기술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한국설비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건설기계협회 등의 수많은 협회들과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방위사업연구원 등의 여러 전문기관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각 기술 분야별로 매칭 되는 협회 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특정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3~5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기술침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침해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 전문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조정절차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결국, 조정절차의 효율성, 실체적 진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일방 당사자의 막대한 자본력과 인적 네트워크에 치우치지 않고, 조정위원들이 기술침해 사건에 대해 중립적인 마인드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고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연유에서 기술 분쟁 사건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침해평가위원회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IV 웹사이트 서비스에 관한 의견

마지막으로 웹사이트 서비스에 관한 간략한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ADR 개선 방안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웹사이트 서비스에 관한 의견들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비형식적이며 간략한 면담을 통해 얻어진 의견들을 정리한 것이다.

첫째, 온라인 신청방식 신설 의견이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의 경우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신청¹³⁵⁾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외의 경우 이메일 및 우편을 통한 신청만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도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둘째, 조정회의록 공개 서비스 의견이다. 물론 일반인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체 공개의 경우 ADR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 하나인 비밀성을 훼손하게 된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수렴되었던 의견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법률대리인에 한정하여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다.

셋째, 조정불성립 사유 게시에 관한 의견이다. 조정불성립이란 말 그대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기술 유용이나 침해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불구속되었다는 것이 죄가 없단 의미는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일부 당사자(특히 대기업)는 조정불성립을 마치 기술 유용이나 침해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되게끔 언론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기술침해 가해자 이미지로부터 기업 이미지 쇄신을 도모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엄연한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조정불성립에 대한 사유를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견이 존재한다.

135) https://koipa.re.kr/home/login_dispute.do?menu_cd=000077.

법·제도 연구

기술 분쟁해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ADR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중소기업의 ADR 활용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제5장 결론

분쟁의 대상이 기술인 경우 소송제도를 통한 분쟁해결은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분쟁해결에 이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ADR이다. ADR은 소송을 통해 담보해 줄 수 없는 ‘전문성’, ‘비공개성’,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써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활용은 높지 않고 ADR제도 활성화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수요는 높다.

이러한 상황, 즉 활용도는 낮으나 활성화 및 개선방안에 관한 수요는 높은 상황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실시되었다. 크게 다음 세 가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답았다. ① ‘II. ADR제도의 도입 배경과 운영 현황’을 통해서 ADR 도입 배경과 성격, ADR 개념과 종류 그리고 지식재산 관련 ADR 기관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높은 수요를 살펴보았다. ② ‘III. ADR제도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서 선행연구들이 분석한 ADR제도의 낮은 활용에 관한 모습들을 조사하고 검토해 보았다. ③ ‘IV. ADR 개선 방안’을 통해서 조정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과 전문성(기술전문성과 조정전문성) 제고 방안, 시효중단을 비롯한 조정과 소송절차의 관계 그리고 기타 제언들을 제시하였다. ADR 개선 방안에 관한 제언들은 아래와 같다.

표 35 | ADR 개선 방안 요약

구분	개선 방안		내용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독립성·중립성 제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호사 비용 축소 제언 관련 규정 신설 제언(독일 대체적 소비자분쟁해결법)
	전문성 제고 방안	기술전문성 제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원 활용안
		조정전문성 제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교육 수립 (노동위원회 조정전문가 과정, 독일 조정인 기본교육) 조정전문가 자격증 교재 편찬
조정과 소송간의 관계	시효중단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효중단효 규정화(중소기업기술분쟁)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1개월 시효중단효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참고안)
	조정과 소송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정과 소송절차 동시 진행 가능안
기타제언	조정위원회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재산 관련 ADR 기관 통합안
	상설조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설조정위원회 필요성 제언
	기술침해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감정제도 개선을 통한 전문가위원회 구성
	웹사이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신청 서비스 제공(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에 한하여) 조정회의록 열람 서비스 조정불성립 사유 공개 서비스

행정형 ADR제도는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산하기관을 통해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특히, 기술의 분쟁의 경우 ADR의 장점은 긍정적으로 발휘될 것이다. 신속하고 저렴할 뿐만 아니라 분쟁 대상의 특수성을 보존할 수 있으며 관련 기술의 비밀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데에서 ADR 활용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추구하며 분쟁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ADR제도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정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조정절차의 개선방안,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28권 제1호(2006)
-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2018)
- 김민중, 우리나라의 ADR제도의 발전기반구축을 위한 실천과제,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제30권 제1호(2010년 봄)
- 김봉철,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9.12.)
- 김상찬, 우리나라 행정형 ADR제도의 활성화 방안,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46집(2012.5.)
- 김상찬, 일본의 조정인 양성현황과 시사점,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59권(2012.9.)
- 고형석·서상문, 조정제도와 소멸시효의 중단,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25권 제3호(2013.2.)
- 김시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노력의 평가와 과제,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42권(2018.9.)
- 김연,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 특별 조정절차의 검토,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민사소송 제14권 제1호(2010)
- 손승우, 지식재산 분쟁해결을 위한 ADR의 활용과 정책 방향, 지식재산정책 Vol.14(2013)
- 손승우,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규범 모델 연구[I] - ODR에 관한 국제 규범 동향 분석, 한국법제연구원(2011.6.)
- 심준섭, 국내 행정형 ADR 기구의 비교분석 - 문제점과 대안, 공존협력연구소 공존협력연구 제1권 제1호(2012.12.)
- 윤선희, ADR에서의 지적재산권분쟁, 중재연구 제13권 제1호, 125~167(2002)
-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제17판(2018)
- 이성엽, 행정형 ADR로서 개인정보분쟁조정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 연구 제36권(2013.7.)
- 이성희, 효과적인 조정방법에 대한 실증연구,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 심판, 제25호(2006)
- 임동진, 대안적 갈등해결방식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2011)
- 조용순, 산업보안 ADR제도 개선방안 연구 - 산업보안 관련 법률 및 주요국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0권 제1호(2020)
- 함영주, 미국의 민간형 ADR의 운영에 대한 실태 조사: JAMS방문 인터뷰, 한국조정학회 분쟁해결 제2호(2016)
- 황승태·계인국, 한국형 대체적 분쟁해결(ADR)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6)

경청, Gallup, 2021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2018)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2020년도 중소기업기술 보호수준 실태조사 보고서(2021.02.)
사법정책연구원,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연구(2018)
사법정책연구원, 우리나라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737 검토보고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2020년도 지식재산 관련 소송통계 업데이트
현대경제연구원, 국내외 스타트업 현황과 시사점(2016.5.16.)
행정안전부, 2018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2018)
산업일보, 기술 탈취 피해 기업 소송 비용지원, 법적 근거 마련한다
아시아 투데이, 2020 국감 중기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 연간 접수 건수가 20건 내외
이데일리, 中企 토대 빼앗는 대기업 기술탈취, 자식 세대엔 없어야
중도일보,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뉴스1, 특허청분쟁조정, 특허상표권 분쟁해결 대안으로 부상

법·제도 연구

기술 분쟁해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ADR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중소기업의 ADR 활용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발행인 손승우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3, 9층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화 02-2189-2600
홈페이지 www.kiip.re.kr
디자인/인쇄 (주)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 범위
[제4유형] 제1유형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법·제도

법제분석

기술 분쟁해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ADR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대전 서구 청사로 189
Tel : 1544-8080 Fax : 042)489-0194
<http://www.kipo.go.kr>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Tel : 02)2189-2600 Fax : 02)2189-2694
<http://www.kiip.re.kr>

ISBN : 979-11-6884-082-9
DOI : 10.8080/P9791168840829